(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亚(보증비용부과형)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20
[보험용어 해설]	26
ᄱᇝᄀᇿᅳᄀᇚᅅᅎᄔᄔᅕᅳᄱᅐᄱᆼᅜᆌᅕᅛᄱᅐᄔᅎᄿ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皿(보증비용부과형)(해지보증형)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Ⅲ(보증비용부과형)(해지미보증형)	
(무)교보CI납입면제특약Ⅱ 1형	
(무)정기특약	
(무)건강치료특약	
(무)2대질병진단특약	
(무)교보2대질병진단보장특약	
(무)교보2대질병수술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무)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표 1형	
(무)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	
(무)대상포진및통풍보장특약(갱신형)Ⅲ	
(무)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표	
(무)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표	
(무)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Ⅱ	
(무)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입원보장특약(무)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무)입원특약Ⅱ	
(무)교보CI보장특약Ⅱ	
(무)두번보장CI특약(갱신형)Ⅷ	
(무)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약[암] 2형	
(무)재해사망특약	
(무)재해상해특약 1형	
(무)재해장해연금특약 2형	
(무)교보고도장해보장특약	
(무)재해치료비특약[1형]	
(무)골절치료특약Ⅱ	
(무)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Ⅱ 1형	
New(무)알지다트양	851

(무)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무)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922
(무)교보암수술특약(갱신형)Ⅲ 1형	960
(무)교보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Ⅲ 1형	987
(무)교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皿 1형	
(무)건강체할인특약Ⅱ	1045
(무)사망보장증액특약	1052
선지급서비스특약	1069
사후정리특약	1080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	1088
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	1095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무)연금전환특약皿	1106
(무)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1121
교보중도부가서비스특약표	
[별첨] 장해분류표	1148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①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②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③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중심으로 각종 특약을 통해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축이나 연금상품이 아닙니다.

[주계약]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거나적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장기간이줄어들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 II 1형, 무배당 두번보장(디특약(갱신형) III, 무배당 교보암수술특약(갱신형) III 1형, 무배당 교보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 III 1형, 무배당 교보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 III 1형, 무배당 대상포진및통풍보장특약(갱신형) II,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 II 1형]

-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1년 또는 2년 가능)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5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15년마다 갱신(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1~14년 가능)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있습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으며,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을 합하여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1.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제7항의「재진단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전 "첫 번째 암" 또는 직전 "재진 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 장형)]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여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따라 보장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배당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Ⅱ]

-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2년 가능)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계약 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 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을 적용함 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로 합니다.

[무배당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Ⅱ]

- 갱신형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2년 가능)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로 합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 중증치매보장의 경우 보장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설명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

- 치매보장의 경우 보장 범위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조건을 반드시 설명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 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 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계약]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보험금 보장에 필요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해지환급금 보장에 필요한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다만,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급금 보증비용은 제외)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한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민원사항

	- 한편시청
유형	보험상품 안내관련
	A고객은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목돈마련에 유리하고 자금인출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서에 서명함
내용	A고객은 상품설명서 및 증권, 약관 등 중요서류를 모두 수령하였으나 지인이었던 모집인 B씨의 설명을 믿었기 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최초 안내 받았던 내용과 달리 가입한 상품이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었으며 지금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을확인함
	A고객은 가입 당시 사망보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고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며 고 객불만을 제기함
유의 사항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 상품이 아니므로, 보험 가입 전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함 또한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상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 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유형	유니버셜 제도관련
	A고객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동안 매월 기본보험 료 △△만원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 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월대체보험료 만큼만 매월 납입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모집인 B씨에게 안내 받음.
내용	A고객은 2년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로 수 개월 동안 월대체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으며, 이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해지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자유납입으로 인한 월대체보험료 증가와 그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소진으로 예상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것을 확인함
	이에 유니버셜 기능 및 월대체보험료 공제에 대한 설명 이 부족했다며 고객불만을 제기함.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 험료를 매월 공제함
유의 사항	특히, 중도인출을 하거나 보험료를 기본보험료보다 적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으 며, 계약이 조기에 실효될 수 있음. 보험기간(종신)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이외에 추가금액을 납입하여야 함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65세형), 체증보 장형 플러스(51세형, 61세형, 71세형))

-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말합니다.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기본사망보험금은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한 경우 전환 전 주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전환 신청 당시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합니다. 전환계약의 생활자금 및 사망보험금은 해당 보험금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기본보장형, 집중보장형(65세형), 체증보장형(51세형, 61 세형, 71세형)]

-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말합니다.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기본사망보험금은 본문 설명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무배당 재해상해특약(1형), 무배당 재해장 해연금특약(2형),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써 약관 상의 재해분류표

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따라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 "첫 번째 암"은 「암보장개시일」이후 처음으로 진단되는 암을 말합니다.
- "재진단암"은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된 이후 진단 확정되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재진단암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 특약 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 II 1형, New 무배당암진단특약]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무배당 교보2대 질병진단보장특약, 무배당 대상포진및통풍보장특약(갱신형) II]

-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교보CI납입면제특약Ⅱ, 무배당 교보CI보장특약Ⅱ, 무배당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Ⅷ]

- CI관련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중대한 질병은 전체 질병이 아 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 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교보CI납입면제특약॥, 무배당 교보CI보장특약॥, 무배당 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약[암] 2형]

-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무배당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WII]

-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 는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 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 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손상)"에 대한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입니다]

 "두번째 CI보험금" 중 "두번째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 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 니다.

[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Ⅱ 1형, 무배당 교보2대질병수술 보장특약, 무배당 교보암수술특약(갱신형)Ⅲ 1형, 무배당 허혈심 장질환및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Ⅱ]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 11 1형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수술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무배당 입원특약Ⅱ,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무배당 교보중환지실입원특약(갱신형)Ⅲ 1

형,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입원보장특약]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암] 2형]

- 소액치료비관련암 및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양성뇌 종양(경계성종양 제외)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궁증치매상태'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치매에 해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11]

- 이 특약에서 "두번째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무배당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1]

- 이 특약에서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장개시 일로 합니다.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분류부호 1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은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배당 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

- "경도치매상태" 및 "중등도치매상태"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치매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이 특약의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경도치매보험금" 및 "중등도치매보험금"의 경우 "경도치매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중등도치매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보험금"에서 "경도치매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 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라도 "경 도치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 약관에서 정한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해에 따른 중증치매상태는 보장)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다 만, 재해에 따른 일상생활장해상태는 보장)
- '일상생활장해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 정도 이상의 중증치매인 경 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 입원비는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약관상 명시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에 따라 해당하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더라도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는 이 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New 무배당암진단특약]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계약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 기타피부암, 전립선암 및 양성뇌종양 은 원칙적으로 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대장점막내암, 중대한 갑상선암 및 초기유방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은 원칙적으로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

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Ⅱ 1형]

-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암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입원을 보장하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 따른 암직접치료입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②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날부 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 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 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무배당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WII]

-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갱신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시에는 제외)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New 무배당암진단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되는 경우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 태"로 진단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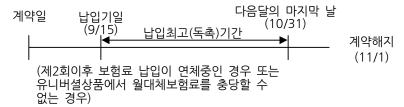
[무배당 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 태"로 진단되는 경우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① 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유니버셜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②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선택하 신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선택하신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선택하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그 특약을 해지합니다.
- ④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멸 사유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선택하신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선택하신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

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1.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2.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 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 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등 이 결정됨

11. 책임준비금 (계약자적립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III (보증비용부과형)

약 관

[목차]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표 (보증비용부과형)(해지보증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3
제1조 (목적)	33
제2조 (용어의 정의)	3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43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43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44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47
제6조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47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49
제8조 (보험금의 청구)	49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49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51
제11조 (주소변경통지)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52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5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53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53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53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5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55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55
제18조	(청약의 철회)	58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59
제20조	(계약의 무효)	60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62
제22조	(보험나이 등)	64
제23조	(계약의 소멸)	6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65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65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66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67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		70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72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73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73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73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74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74
제33조	(해지환급금)	75
제3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76
제35조	(보험계약대출)	77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78
-111		70
	분쟁의 조정 등	
	(분쟁의 조정)	
제38조	(관할법원)	78
제39조	(소멸시효)	78
제40조	(약관의 해석)	79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79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79
제43조	(개인정보보호)	80
제44조	(준거법)	80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80
제8관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81
제46조	(적용 대상)	81
제47조	(전환 신청)	81
제48조	(전환계약의 기초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	81
제49조	(전환계약의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82
제50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84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85
(별표 2)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표	90
(별표 3) 재해분류표	91
(별표 4) 장해분류표	92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 관련)	93

무배당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Ⅲ(보증비용부과형)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 약관

※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는 최저해지환급금 및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해당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라. 매년 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 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일시납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 또는 월납 계약의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에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다음과 같습 니다.
 - (1)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월납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하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월납 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이라 합니다) 동안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월납 기본보험료 × 12 × 3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합니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

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2) 일시납 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합니다.

○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다만,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10%)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 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 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라. 월대체보험료

- (1) 월납 계약: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

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 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 립금에서는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 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 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는 데도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특 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 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월 기본보험 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 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2) 일시납 계약: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종료 후 유지관련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월대체보험료로 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 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위험보험료]

매월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해 필요한 보험료

[설명]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월납 계약

납입의무기간 이내: 해당월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최저사 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특약 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월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 일시납 계약

: 해당월 위험보험료 +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종료 후 유지관련비용)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월납 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 예1)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20일
 - → 2년 이내 매월 20일, 2년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 예2)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10일
 -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 마. 예정월대체보험료: 예정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월대 체보험료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월납 계약: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최저해지환 급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 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
- (2) 일시납 계약: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종 료 후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5.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계약자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보험 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 다.
 - 마. 예정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보험료 [제46조(적용 대상)에 따른 전환계약(이하 "전환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 전환계약의 일시납보험료]에서 예정월대 체보험료 및 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연복리 2.5% 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바. 해지공제액: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으로서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일 시납 계약 및 전환계약에는 해지공제액이 없습니다.
 - 사. 예정해지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적 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아. 기본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 예정적립금의 101% 금액,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자. 기본사망보험금: 보험종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

액을 말하며,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은 (별표 1) "보 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1) 기본보장형 플러스: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집중보장형 플러스: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6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3) 체증보장형 플러스: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세형나이(이하 "세형나이"라 하며, 가입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 체증보장형 플러스의 체증경과년수: 세형나이 계약해당일 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를 말합 니다. 다만,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 로 하며, 세형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년수 를 최대로 합니다.(51세형은 최대 30년, 61세형은 최대 20년, 71세형은 최대 10년)

[체증경과년수 예시]

기준: 체증보장형 플러스(51세형)

경과나이	51세	52세	53세		79세	80세
						이후
체증경과년수	1년	2년	3년	•••	29년	30년

- 카.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과 예정적립금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타.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지급에 따라 자동 감액된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전환계약 인출금액 을 차감하고, 전환계약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파. 전환계약의 가산보험금액: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적립금보다 큰 경우에 계약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 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가산보험금액 예시]

계약자적립금 3천만원, 예정적립금 2천5백만원인 경우: 가산보험금액은 5백만원

계약자적립금 3천5백만원, 예정적립금 3천5백만원인 경우: 가산보험금액은 미발생

- 하. 최저해지환급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해지환급금으로서 예정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
- 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월납 계약은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시납 계약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시작된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 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 은 제외된 금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 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더. 최저사망보험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 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전환계약의 경우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러.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머.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기본보장형 플러스 및 집중보 장형 플러스 계약에 한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의 발생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다만, 전환계약의 경우 (별표 2)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⑤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 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 지 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⑦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① 기본보장형 플러스 및 집중보장형 플러스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며, 이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금의			
연계약해당일	1.0%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시점의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금의			
연계약해당일	1.5%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의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금의			
연계약해당일	2.0%			

- ②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는 장기유 지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제33조(해 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⑦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 니다)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⑤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조사목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⑧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기본보험료 또는 충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의 청구', '주소변경통지', '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에 해당하는 조항

[연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 는 것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 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 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 는 방법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표준체란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 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 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

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1. 보험료의 납입방법
 - 2. 보험가입금액
 - 3. 계약자
 -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기본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기본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가납입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 및 상

- 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감액 이후의 "추가납입보험료"
 - = 감액 전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이후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 =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④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가산보험금액 도 동일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는 가산보험 금액만의 감액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는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가 제5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 여야 합니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 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

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 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초 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에는 이 계약의 납입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계약 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 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 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④ 보험료 할인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하는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월납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 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② 일시납 계약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경우에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

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충당되어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를 하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납 계약은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시납 계약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시작된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예정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⑦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⑧ 회사는 다음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안내사항을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1.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2.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1년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를 미납할 때

[보험료 미납에 따른 안내사항 예시]

- 월대체보험료의 개념
-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된다는 사실 등
- ⑨ 월납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청약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월납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계약자는 다음에 정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충당되지 못한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가. 연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미납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2)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충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 료 횟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해당액

나. 연체이자

연체보험료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평균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의 기본보험금 (전환계약의 경우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 및 가산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보험금액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활(효력회복)할 때 제2조(용어의 정의)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의 '다. 보험료 납입한도' 중 보험료의 납입한도(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에 따라 납입 가능한 보험료가 연체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가 충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④ 월납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된 경우 및 일 시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서 제4항,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을 최초 청약할 때 제 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 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화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 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 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

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 저보증이율(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 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3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최저해지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 일시납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연도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보험연도]

해당년도 보험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의 경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 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 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

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 예)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 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④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기본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인출금액)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 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

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또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

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 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결코(실수로도)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타당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8관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제46조 (적용 대상)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이하 "생활자금 전환"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활자금 전환에 의한 계약을 "전환계약"이라 합니다.

- 1. 전환 신청 당시 주계약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 이상 90세 이하인 경우
- 2. 전환 신청 당시 주계약 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
- 3.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는 경우

제47조 (전환 신청)

-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 신청 후 전환 전 계약으로 환원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② 생활자금 전환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며, 전환계약의 사망보험금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제48조 (전환계약의 기초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계약의 보험료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전환 전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하며, 최저한도는 500만원으로 합니다.
- ②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전환 전 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전환 전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전환계약의 일시납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

합니다.

- ③ 전환계약의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율 및 위험률은 전환 전 계약의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 ④ 전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⑤ 전환계약의 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전환계약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제2항에 따라계약자적립금에 가산된 해지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에서 공제합니다.
- ⑥ 전환계약의 예정월대체보험료는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⑦ 전환계약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저사망 보험금 보증기간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 지급합니다.
- ⑧ 전환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⑨ 전환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월계약해당일부터 예정해지환급 금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 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49조 (전환계약의 생활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전환계약 보험가입금액의 90% 이내에서 생활자금 지급대상 보험가입금액과 생활자금 지급기간(연 단위 지급, 최소

- 2회~최대 20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대상 보험가입금액을 생활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하며, 해지환급금(전환 전주계약의 해지환급금이 전환계약의 일시납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합니다.
- ④ 생활자금은 전환 신청일을 포함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전환 신청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전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날을 전환 신청일에 해당하는 날로 하여 지급합니다. 생활자금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생활자금 지급은 계약자 신청에 의하여 중지가 가능하며, 계약자가 생활자금 지급 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감액을 중지하고, 생활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생활자금 지급을 중지한 후 다시 생활자금의 지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 ⑥ 전환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생활자금 전환에 의한 생활자금 지급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생활자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50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전환계약의 생활자금 지급이 완료되거나 계약자가 생활자금 지급 중지를 신청한 이후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되, 연 4회까지는 인출수수료 를 면제합니다.
- ② 전환계약의 보험료 추가납입은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한 금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③ 전환계약의 경우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전환계약의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⑤ 전환 신청 당시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 기본보장형 플러스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집중보장형 플러스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65세	65세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 체증보장형 플러스

	보험기간		
세형나이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디비정	보장개시일부터 51세	51세 계약해당일부터	
51세형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61세형	보장개시일부터 61세	61세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71세형	보장개시일부터 71세	71세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2. 지급내용

(기준 : 보험가입금액)

			(1 2 1 - 0 1 0 1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사망하였을 경우	와	기본보험금

(주)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의 기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기본보험료가 월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2.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예정적립금의 101% 금액,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종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기본보장형 플러스: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집중보장형 플러스: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6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 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체증보장형 플러스: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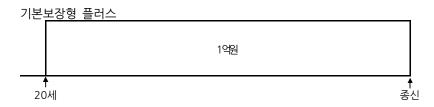
○ 제2보험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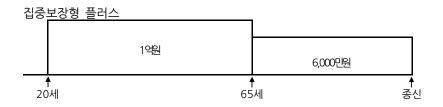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 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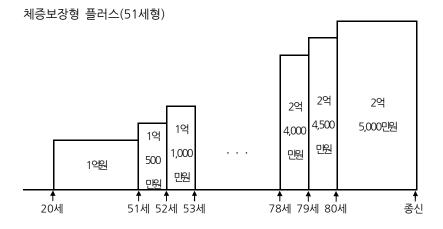
- 4. 체증보장형 플러스의 체증경과년수는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를 말합니다. 다만,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 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하며, 세형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 년수를 최대로 합니다.(51세형은 최대 30년, 61세형은 최대 20년, 71세형 은 최대 10년)
- 5.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 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합니다.
- 6. 예정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복리 2.5%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7. 계약자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8. 기본보장형 플러스 및 집중보장형 플러스 계약에 한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합 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 는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 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종목별 기본사망보험금 예시]

기준: 2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







(주)

- 1. 위의 피보험자 나이는 제22조(보험나이 등)에 따른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위의 예시금액은 보험가입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위의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체증보장형 플러스의 경과나이별 기본사망보험금 예시]

기준: 2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

7-11-101	기본사망보험금 (단위: 만원)		
경과나이	51세형	61세형	71세형
20세			
•••	10,000		
50세		40.000	
51세	10,500		
52세	11,000	10,000	
•••	•••		
59세	14,500		10,000
60세	15,000		
61세	15,500	10,500	
62세	16,000	11,000	
•••	•••	•••	
69세	19,500	14,500	
70세	20,000	15,000	
71세	20,500	15,500	10,500
72세	21,000	16,000	11,000
79세	24,500	19,500	14,500
80세 이후	25,000	20,000	15,000

(주)

- 1. 위의 피보험자 나이는 제22조(보험나이 등)에 따른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위의 예시금액은 보험가입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위의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2)

사망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옵션의 사망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상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 + 전환계약의 가산보험금액

(주)

- 1.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은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과 예정적립금의 101%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전환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은 생활자 금 지급에 따라 자동 감액된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서 전환계약 인출금 액을 차감하고, 전환계약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전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전환 전 계약의 기본사망보험금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3.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전환계약의 기본보험금액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합니다.
- 4. 예정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복리 2.5%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5. 전환계약의 가산보험금액은 계약자적립금이 예정적립금보다 큰 경우에 계약 자적립금과 예정적립금과의 차이에 따라 증감되는 보험금액으로 유효한 계 약에 대하여 매일 계산하며, 계산 당일에만 확정 적용합니다.
- 6. 전환계약이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등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생활자금 전환에 의한 생활자금 지급도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으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에 지급된 생활자금이 있 는 경우 회사가 지급할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4)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참조)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 관련)

1. 사망보험금 (제3조) 및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제6조 제4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2. 해지환급금 (제33조 제1항)

기간	기간 지급이자	
	1년이내	공시이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긴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3. 생활자금 (제49조 제4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9조)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6항 중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무배당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 III (보증비용부과형)

약 관

[목차]

(무)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표 (보증비용부과형)(해지미보증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99
제1조 (목적)	99
제2조 (용어의 정의)	9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18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18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8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1
제6조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112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14
제8조 (보험금의 청구)	114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14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16
제11조 (주소변경통지)	116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17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117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18
제14조 (계약 전 앜맄 이무)	118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18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120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21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121
제18조	(청약의 철회)	123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24
제20조	(계약의 무효)	125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27
제22조	(보험나이 등)	128
제23조	(계약의 소멸)	12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29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29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31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외	-
계약의	해지)	132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의	회 복))
		135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회 복))
		137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137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137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38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39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39
제33조 (해지환급금)	140
제3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140
제35조 (보험계약대출)	142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142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43
제37조 (분쟁의 조정)	143
제38조 (관할법원)	143
제39조 (소멸시효)	143
제40조 (약관의 해석)	143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44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44
제43조 (개인정보보호)	144
제44조 (준거법)	145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45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46
(별표 2) 재해분류표	152
(별표 3) 장해분류표	152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 관련)	153

무배당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Ⅲ(보증비용부과형) 기본보장형, 집중보장형, 체증보장형 약관

※ [기본보장형], [집중보장형], [체증보장형]은
최저사망보험금은 보증하고, 최저해지환급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 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매월의 계약해당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 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라. 매년 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 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일시납 계약의 일시납 보험료 또는 월납 계약의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 보험료로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에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월납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하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라 합니다) 이내에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3)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을 경우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한도

(1) 월납 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이하 "납입기간"이라 합니다) 동안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합니다.

○ 월납 기본보험료 × 12 × 300% × 가입경과년수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년수는 가입할 때를 1년으로 하고, 이후 연계약해당일 기준으로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을 최대한도로합니다.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

에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2) 일시납 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로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다음에 정한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합니다.

○ 일시납 기본보험료 × 10%(다만, 초년도는 일시납 기본보험료 × 110%)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 한도에서 제외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 는 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 납입한도로 합니다.

라. 월대체보험료

(1) 월납 계약: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 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 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추가납입보 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서는 해지공제액을 차 감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적립금에서 해 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합니다)」(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 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월까지 납입하기 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였는데도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 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 다. 이 경우 해당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 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 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해당월 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할 경우에는 해당월 계약 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 비용(기타비용)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때에 공제합니다.

(2) 일시납 계약: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종료 후 유지관련비용)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의 합계액을 월대체보험료로 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 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위험보험료]

매월 피보험자의 성별 및 나이 등을 기준으로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설명]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 월납 계약

납입의무기간 이내: 해당월 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 최저사 망보험금 보증비용 +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월 위험보험료(보험료 납 입면제 보장 포함)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유 지관련비용)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특약이 부가 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 일시납 계약

: 해당월 위험보험료 +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종료 후 유지관련비용)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월납 계약 월대체보험료 공제 예시]

예1)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20일

- → 2년 이내 매월 20일, 2년 이후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 예2)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10일
 - →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보험료 공제

마. 예정월대체보험료: 예정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월대

체보험료를 말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월납 계약: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 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보험료 납입면제 보장 포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 산됩니다.

(2) 일시납 계약:

해당월의 예정위험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종 료 후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는 제외)에서 인출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계약자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보험 료에서 월대체보험료 및 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이 계약의 공시이율[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참조, 이하 같습니다]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 다.
- 마. 예정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보험료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 및 인출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연복리 3.0%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바. 해지공제액: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으로서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일 시납 계약에는 해지공제액이 없습니다.
- 사. 예정해지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적 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아. 기본보험금: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 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자. 기본사망보험금: 보험종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 액을 말하며, 제1보험기간 및 제2보험기간은 (별표 1) "보 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1) 기본보장형: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집중보장형: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6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체증보장형: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세형나이(이하 "세형나이"라 하며, 가입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차. 체증보장형의 체증경과년수: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를 말합니다. 다만,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하며, 세형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최대로 합니다.(51세형은 최대 30년, 61세형은 최대 20년, 71세형은 최대 10년)

,	. • 🗀					
[체증경과년수 예시]						
기준: 체증보장형(51세형)						
경과나이	51세	52세	53세		79세	80세 이후
체증경과년수	1년	2년	3년	•••	29년	30년
		•				

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월납 계약은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시납 계약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시작된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타. 최저사망보험금: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 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을 말합니다.
- 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 기본보장형 및 집중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1항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의 발생을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 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 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⑤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

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⑬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증 지 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⑦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① 기본보장형 및 집중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며, 이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의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금의
연계약해당일	1.0%
계약일부터 15년이 되는 시점의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금의

연계약해당일	1.5%
계약일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의	발생일 전일 계약자적립금의
연계약해당일	2.0%

- ②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는 장기유 지보너스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아니므로 제2조(용어의 정의)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의 '나. 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한 추가납입 보험료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를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⑥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 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제33조(해 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⑦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장기유지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적용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⑤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조사목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⑧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미납입된 기본보험료 또는 충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의 책임"의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보험금의 청구', '주소변경통지', '제

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 에 해당하는 조항

[연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 는 것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 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 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 는 방법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 표준체란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 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 자가 체결한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 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1. 보험료의 납입방법
 - 2. 보험가입금액
 - 3. 계약자
 -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기본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기본사망보험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추가납입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감액 이후의 "추가납입보험료"
 - = 감액 전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감액 이후의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 =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 감액 전 보험가입금액
- ④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 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자는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 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 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

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초

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에는 이 계약의 납입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 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계약 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 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 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기본보험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 험료로 보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 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기본사망보험금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사망보험금 감소분 이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④ 보험료 할인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고액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납입하는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 제외)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월납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 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② 일시납 계약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등의 사유로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경우에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납입최고(독촉)기 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보험료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계약 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 중 해당 월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으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충당되어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 (독촉)를 하지 않으며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 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

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납 계약은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시납 계약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시작된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예정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예정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⑦ 제1항에서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⑧ 회사는 다음 경우에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안내사항을 계약자 에게 제공합니다.
 - 1.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 2.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1년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를 미납할 때

[보험료 미납에 따른 안내사항 예시]

- 월대체보험료의 개념
-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 계약자적립금이 감소된다는 사실 등
- ⑨ 월납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할 경 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청약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월납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다음에 정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충당되지 못한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합니다.

가. 연체보험료

- (1) 보험료 납입의무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미납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 (2)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 청약일까지 충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 료 횟수 ×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해당액

나. 연체이자

연체보험료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다만,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평균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금액은 해지된 시점의 기본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보험금액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호를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활(효력회복)할 때 제2조(용어의 정의) '4. 보험료납입 관련 용어'의 '다. 보험료 납입한도' 중 보험료의 납입한도(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에 따라 납입 가능한 보험료 가 연체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연체보험료가 충당되지 못한 월대체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④ 월납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해지된 경우 및 일 시납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제2항에서 제4항,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을 최초 청약할 때 제 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 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 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한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 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 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0%)로 적립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 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3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기간이 지난 후부터, 일시납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중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출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보험연도]

해당년도 보험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 ② 제1항의 경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계약자적 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 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 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 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 예)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 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④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기본보험금 계산시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인출금액)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 및 상기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35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또는 해지환급금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40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결코(실수로도)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타당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3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 기본보장형

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집중보장형

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보장개시일부터 65세	65세 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 체증보장형

.III - II I 0I	보험기간		
세형나이	제1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1 비청	보장개시일부터 51세	51세 계약해당일부터	
51세형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C1비청	보장개시일부터 61세	61세 계약해당일부터	
61세형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71 비청	보장개시일부터 71세	71세 계약해당일부터	
71세형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종신까지	

2. 지급내용

(기준:보험가입금액)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사망하였을 경우	와	기본보험금

(주)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의 기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며,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기본보험료가 월계약해당일에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합니다.
- 2. 기본보험금은 「기본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의 101% 금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본사망보험금은 보험종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 (1) 기본보장형: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2) 집중보장형: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6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보 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체증보장형:

○ 제1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감하고, 추가납입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제2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한 금액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을 차 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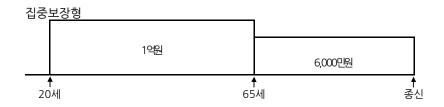
- 4. 체증보장형의 체증경과년수는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사망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를 말합니다. 다만, 세형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년 이 경과한 것으로 하며, 세형나이 이후 80세 계약해당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최대로 합니다.(51세형은 최대 30년, 61세형은 최대 20년, 71세형은 최대 10년)
- 5. 최저사망보험금은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기본보험금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 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합니다.
- 6. 예정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복리 3.0%를 사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7. 계약자적립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을 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8. 기본보장형 및 집중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사망보험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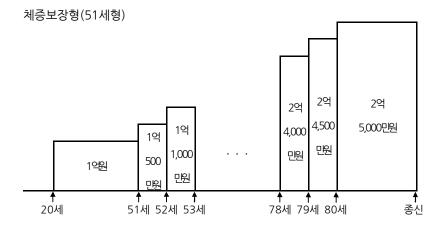
험금과 해지환급금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종목별 기본사망보험금 예시]

기준: 20 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 억원







(주)

- 1. 위의 피보험자 나이는 제22조(보험나이 등)에 따른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위의 예시금액은 보험가입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위의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체증보장형의 경과나이별 기본사망보험금 예시]

기준: 2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

7171.101	기본사망보험금 (단위: 만원)			
경과나이	51세형	61세형	71세형	
20세				
•••	10,000	10,000	000	
50세				
51세	10,500	10.000		
52세	11,000	10,000		
•••	•••	10,500		
59세	14,500		10,000	
60세	15,000			
61세	15,500			
62세	16,000	11,000		
•••				
69세	19,500	14,500		
70세	20,000	15,000		
71세	20,500	15,500	10,500	
72세	21,000	16,000	11,000	
•••	•••	•••	•••	
79세	24,500	19,500	14,500	
80세 이후	25,000	20,000	15,000	

(주)

- 1. 위의 피보험자 나이는 제22조(보험나이 등)에 따른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위의 예시금액은 보험가입금액(1억원)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여부 등에 따라 위의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무배당 교보프리미어종신보험Ⅲ(보증비용부과형) 기본보장형 플러스, 집중보장형 플러스, 체증보장형 플러스 약관 (별표 3)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 관련)

1. 사망보험금 (제3조) 및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제6조 제4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2. 해지환급금 (제33조 제1항)

기간	지급이자	
	11101111	공시이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4.24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9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제6조(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제6항 중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책임준비금을 해지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무배당 교보CI납입면제특약॥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CI납입면제특약॥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CI납입면제특약Ⅱ 1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장해 :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료 납입면제

제3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2 ("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말합니다.

제4조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정의)

이 특약에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3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제5조 ("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 4 ("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6조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

"중대한 질병"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 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사"라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합니다.

제7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제1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이하 "납입면제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1형의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가입 당시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면서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동일한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2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 부가된 특약 중 특약의 피보험자와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무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약은 제외합니다.

- 1. 갱신형 특약
- 2.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소멸되는 특약
- 3. 이 특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약관에 따라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특약
- 4.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제8조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4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납입면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납입면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의 '납입면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발생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납입면제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⑤ 계약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보험료 납입 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 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0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

-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책임 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 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 또는 책임준비금 수 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료 납입면제 절차)

- ① 회사는 제11조(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납입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납입면제 지연을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그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 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주계약이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납입면제 되었 을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납입면제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

-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주계약 또는 납입면제대상 부가특약의 감액 등으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1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하며, 2형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I.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1. 다음의 가. ~ 사. 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 가. 피부의 악성 흑색종(C43)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 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 나.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C44)
 - 다.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C61) 중 초기 전립선암(본 상품의 "초 기 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₀ 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 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 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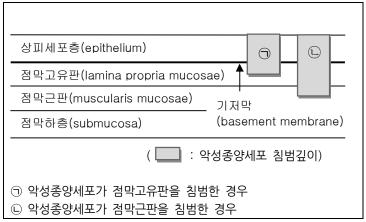
[중대한 갑상선암 정의]

- 1)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갑상 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 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 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2) '1)'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 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3) '1)'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마. 림프성 백혈병(C91) 중 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 RAI Stage 0 이

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병과 관 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는 보장합니다)
- 사. "납입면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납입면제 보장개시 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 2.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신생물(In situ neoplasms)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 4.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
 - 가.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나.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 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II.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 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 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가.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나. CK-MB를 포함한 심장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위의 ①의 가. ~ 나. 중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 외합니다. 예를들면,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 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④ 또한, 위의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scan)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위의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진단된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손

상(myocardialmicroinfar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은 보장 에서 제외합니다.

III. 중대한 뇌졸중 (Critical Stroke)

-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 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 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 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 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위의 ① ~ 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⑤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외상에 의한 경우
 -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 라.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IV. 말기신부전증 (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 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 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V.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합니다.

VI.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①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상태로서, 다음의 두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 량(FEV1.0)이 모두 정상예측치의 30% 미만
 - 나. 호흡곤란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mMRC 호흡곤란 점수가 2점 이 상이거나 CAT(COPD 평가검사) 점수가 10점 이상
- ② 폐기능 검사 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 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폐기능 검사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폐기능 검사의 정도관리기준 중 적합성평가 (within-manoeuvre evaluation)와 재현성평가(between-manoeuvre criteria)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③ "말기 폐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와 함께 호흡기내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확인된 문서화된 mMRC 호흡 점 수 또는 CAT 점수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워발성 폐동맥 고혈압

①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특발성으로 혹은 가족성(유전성)으로 평균 폐동맥의 혈압이 안정시 25mmHg 이상 또는 운동시 30mmHg 이상으로 높아져 그 결과,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폐기능의 장애'가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127.0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다만, 폐질환, 심장질환, 결합조직질환 등 다른 원인 질환(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②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확정은 병력, 폐 환기관류스캔, 폐동맥조 영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심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운동능력검사, 폐동맥반응성 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 야 전문의(심장전문의 또는 호흡기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중증 세균성수막염

- ① "중증 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병인 경우의 세균성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분류부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 가.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 나. 동시에 아래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과 함께 그 결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치과 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이라 함은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 증(hydrocephalus), 뇌농양(brain absces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trophy),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기형 (megacisterna magna), 국소적 허혈(focal infarction), 작은종괴(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 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sign)

으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IX. 다발경화증

- ① "다발경화증"이라 함은 중추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겨서 탈수초 및 축삭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회복되 기를 반복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 ② "다발경화증"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이 나타나야 하며, 뇌척수액검 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다발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다발경화증	G3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X. 루게릭병(근위축성축삭경화증)

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근육약화 및 근위축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신경학적 결손'이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기타 근병증(G72) 및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8)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해 세계신경과학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 진단기준처럼 임상의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단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 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hird Degree Burns and Corrosions)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 (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한 수술"의 정의

I.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 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축상반 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II.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 (excision)하고 인조혈관(artificial vessel)으로 치환(graft)하는 두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②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 -sm repair)

Ⅲ. 심장판막수술 (Heart Valve Surgery)

-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 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 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IV. 5대장기이식수술 (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 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료 납입면제 (제7조)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신 이율(4.0%)	
책임준비금 (제13조)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신 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 이율(8.0%)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년 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정기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정기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 및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 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 2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

-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화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

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 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

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 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 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 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닙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

-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2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 을 경우	1,0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1. 사망보험금 (제3조)

기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71그710101 2101이중보다 6001 이내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4.0%)
기그기이이 (1이이중비터 00이 이내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6.0%)
717710101 0101015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 50%
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건강치료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건강치료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8대특정질병" 및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8대특정질병"이라 함은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의 장애, 결핵및 폐렴, 신부전증중 아래의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4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
 - 1.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의 기본분류에서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 환, 허혈성심질환,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형태 심장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심장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증(急性心筋梗塞症)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의 허혈성심장질환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 되는 질병(분류부호 I21~I23)을 말합니다.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뇌혈관질환" 중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대뇌혈관질환중에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부호 160~162)을 말합니다.
 - 3. "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4. "특정만성호흡기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 기 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 소화성 궤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6. "갑상선의 장애"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 에서 갑상선의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7. "결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결 핵, 결핵의 후유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8. "폐렴"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서 폐 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9. "신부전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서 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8대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따릅니다.
- ③ 이 특약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을 말하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 을 말합니다.
- ④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할 수 있습니다.
- ⑤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

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 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 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을 치료할 때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장기 등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 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 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 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 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 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6조 ("부인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부인과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 "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부인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따릅니다.

제7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8대특정질병

또는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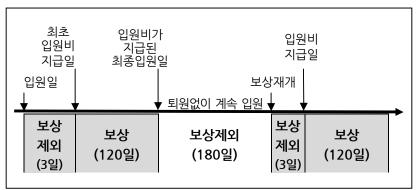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 2대질병치료비 지급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 : 5대장기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 았을 경우
 -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고, 8대특정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 : 8대특정질병입원비 지급
 - ※ 8대특정질병 :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뇌혈관질환, 간질

- 환, 특정만성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 되고,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 하였을 경우
 - : 부인과질환입원비 지급 (다만, 피보험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5대장기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2대질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 3항의 '사망'의 원인 및 '2대질병치료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 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⑥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⑦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6항을 적용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 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 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6항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⑩ 제9항에서 계속 중인 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①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8대특정질병 또는 동일한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1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9) 제1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 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 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수술증명서, 장해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

- 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해 지화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화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 치료비 (제8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	2,0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 었을 경우 50% 감 액 지급)
5대장기이식 수술비 (제8조 제2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5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수술을 받았 을 경우 50% 감액 지급)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 (제8조 제3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 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수술에 한함)	5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수술을 받았 을 경우 50% 감액 지급)
8대특정질병 입원비 (제8조 제4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8대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8대특정질 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 상 입원하였을 경우 ※ 8대특정질병: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 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특정만성호흡 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 선의 장애, 결핵 및 폐렴, 신부전증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부인과질환 입원비 (제8조 제5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부 인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부인과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여 성인 경우에 한함)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8대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8대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주요 류마티스 및 심질환	
1.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100
2.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3. 류마티스무도병	102
4.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105
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106
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107
7. 다발판막질환	108
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109
9. 협심증	120
10. 급성 심근경색증	I21
11. 후속심근경색증	122
1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14. 만성 허혈심장병	l25
15. 폐색전증	126
16. 기타 폐성 심장질환	127
17. 폐혈관의 기타 질환	128
18. 급성 심장막염	I30
19.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분류항목	분류부호
2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21.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22.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134
23.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24.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25. 폐동맥판장애	I37
26.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28. 급성 심근염	140
2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30. 심근병증	I42
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32.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33. 기타 전도장애	I45
34. 심장정지	I46
35. 발작성 빈맥	147
36. 심방세동 및 조동	I48
37. 기타 심장부정맥	I49
38. 심부전	150
39.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뇌혈관 질환	
41. 지주막하출혈	160
42. 뇌내출혈	l61
4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44. 뇌경색증	163

분류항목	분류부호
4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4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5
4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6
48. 기타 뇌혈관질환	l67
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5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간질환	
51. 급성 A형간염	B15
52. 급성 B형간염	B16
53.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54. 만성 바이러스간염	B18
55.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56. 알콜성 간질환	K70
57. 독성간질환	K71
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2
5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3
60.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4
61.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5
62. 간의 기타 질환	K76
6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
특정만성호흡기질환	
64.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65. 단순성 및 검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66.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67. 천식	J45
68. 천식지속상태	J46

분류항목	분류부호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69. 위궤양	K25
70. 십이지장궤양	K26
71.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갑상선의 장애	
72. 선천성 요오드결핍증후군	E00
73.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갑상선장애 및 동류의 병태	E01
74.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75.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E03
76. 기타 비독성 고이터	E04
77.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78. 갑상선염	E06
79. 갑상선의 기타 장애	E07
폐렴 및 결핵	
80.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결핵	A15
81.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82. 신경계통의 결핵	A17
83. 기타 기관의 결핵	A18
84. 좁쌀결핵	A19
85. 결핵의 후유증	B90
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87.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88.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90.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분류항목	분류부호
9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9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신부전	
93. 급성 신부전	N17
94. 만성 신장병	N18
95.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8대 특정질병' 중 일부는 아래 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 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대 특정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분류항목	분류부호	분류항목	분류부호
골 및 관절의 결핵	A18.0+	결핵관절염	M01.1*
		척추의 결핵	M49.0*
		뼈의 결핵	M90.0*
	A18.1+	결핵성 방광염	N33.0*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N74.1*
장,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A18.3+	결핵성 복막염	K67.3*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 절의 결핵성 장애	K93.0*
갑상선독증 [갑상선기능항진증]	E05.0+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	H06.2*

8대 특정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분류항목	분류부호	분류항목	분류부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칸디다심내막염	B37.6+	
다기 브르디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폐렴	J17.1*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수두폐렴	B01.2+	
기생충질환에서의 폐렴	14.7.2.	폐톡소포자충증	B58.3+	
기 6 중 글 전에 시의 패 함	J17.3*	폐포자충증	B59+	
	K77.0*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 생충성 질환에서의		톡소포자 충 간염	B58.1+	
간장애		K//.U*	헤르페스바이러스간염	B00.80+
		아메바성 간농양	A06.4+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0* ^{₹)}	수막구균성 심장병 (수막구균성 심장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	수막구균성 심장병 (수막구균성 심내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 에서의 심근염	I41.0* ^{주)}	수막구균성 심장병 (수막구균성 심근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 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0* ^{주)}	수막구균성 심장병 (수막구균성 심장염 NOS)	A39.5+	

주) I32.0 ~ 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 장합니다. 즉, I32.0 ~ 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 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뇌출혈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I21
5. 후속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6)

부인과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부인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유방의 장애	
1.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2.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3. 유방의 비대	N62
4.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5. 유방의 기타 장애	N64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6. 난관염 및 난소염	N70
7.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8.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9.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3
1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N74
11. 바르톨린선의 질환	N75
12. 질 및 외음부의 기타 염증	N76
1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음질의 궤양 및 염증	N77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14. 자궁내막증	N80
15. 여성생식기탈출	N81
16.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N82
17. 난소, 난관 및 넓은인대의 비염증성 장애	N83
18. 여성생식관의 폴립	N84

분류항목	분류부호
19. 자궁경부를 제외한 자궁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5
20.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21.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22.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8
23. 질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89
24. 외음부 및 회음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	N90
25.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N91
26.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	N92
27. 기타 이상 자궁 및 질 출혈	N93
28. 여성생식기관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및 기타 병태	N94
29. 폐경 및 기타 폐경전후 상해	N95
비뇨생식계통의 기타 장애	
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양성신생물	
31. 입 및 인두의 양성 신생물	D10
32. 주침샘의 양성 신생물	D11
33. 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D12
34. 기타 및 부위불명의 소화계통의 양성 신생물	D13
35.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3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37.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38.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D17
39.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종	D18
40.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41.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42.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분류항목	분류부호
43. 멜라닌세포모반	D22
44.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3
45.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46. 자궁의 평활근종	D25
47.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48.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4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50.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51.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52.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D31
53.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5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55.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5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양성 신생물	D3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8.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59.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60.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61.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62.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3.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65.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분류항목	분류부호
6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D47.1, D47.3, D47.4, D47.5 제외)
6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습관적 유산자(N96), 여성불임(N97),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N98)은 보 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부인과질환 분류표'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 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부인과질환 분류표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분류항목	분류부호	분류항목	분류부호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자궁경부의 결핵	A18.15+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N74.1*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결핵 성 자궁내막염, 결핵성 난소염 및 난관염	A18.16+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3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제8조 1호에서 제5호)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71.2710101 24010151111 4001 01111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4.0%)	
71.7.10101 61010151151 0001 0111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6.0%)	
717710101 0101015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2대질병진단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강해 : (별표 3) 강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강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을 말하며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2대질병치료비(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50% 감액 지급)(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 2대질병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후에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 대질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

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항의 '사망'의 원인 및 '2대질병치료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

- 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④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 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화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 금 액
2대질병 치료비 (제4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질 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2대질병: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1,000만원 (다만,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 을 경우 50% 감액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뇌출혈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121
5. 후속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1. 2대질병치료비 (제4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기그기이이 61이이층보다 00이 이내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6.0%)
717710101 0101015 717L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2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2대질병진단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2대질병진단보장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하 "2대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 이라 합니다)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결과에 일치되게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 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는 경우
- 2.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 정되는 경우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2대질병 진단보험금(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2대질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2 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후에 2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2 대질병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항의 '사망'의 원인 및 '2대질병진단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④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 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③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이 사망 이외 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질	1,000만원
2대질병	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가입 후 1년
진단보험금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미만에 진단확정되었
(제4조)	※ 2대질병 :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	을 경우
	성심근경색증"	50% 감액 지급)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2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뇌출혈 및 뇌경색증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121
5. 후속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1. 2대질병 진단보험금 (제4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시합기술의 31월이우구나 60월 이내 기신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시합기술의 이 철어부구나 90월 이내 기신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시납기글의 키글어구 기신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2대질병수술보장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2대질병수술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2대질병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2대질병"이라 함은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 증"(이하 "2대질병"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 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 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 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 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특정 행위란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될때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查) 등] 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2대질병수술비((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 2대질병 :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 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2대질병수술비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의 수술개시일부터 1년(365일) 이내 1 회에 한하여 각각 지급하며, 수술개시일부터 1년(365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 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3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 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 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 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7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2대질병수술비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2대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2대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2대질병 :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수술 1회당 30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2대질병수술비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각각의 수술개시일부터 1 년(36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각각 지급하며, 수술개시일부터 1년(365일) 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

-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뇌졸중	
1. 지주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 심근경색증	I21
5. 후속심근경색증	122
6.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관련)

1. 2대질병수술비 (제5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717 11071 HUU-1 1101 F10 11HF1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암직접치료입원특약(요양병원제외)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제8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②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조직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8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과는 구분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제8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이하 "대장점

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 기저막			
점막하층(submucosa) (basement membran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판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판을 침범한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봅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 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다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요양병원"이라 합니다)은 제외합니다)에 입실(입 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조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 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후 산하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 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함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성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 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에 적용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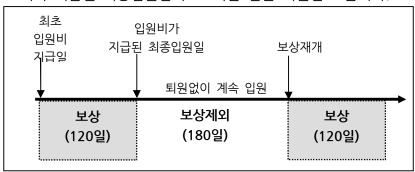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 정되고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 : 기타피부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 였을 경우
 - : 제자리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 : 대장점막내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 정되고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 : 경계성종양직접치료입원비 지급
-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 였을 경우
 - : 갑상선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 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 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입원 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④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동일한 제자리암, 동일한 경계성종양, 동일한 갑상선암 또는 동일한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 동일한 기타피부암, 동일한 제자리암, 동일한 경계성종양, 동일한 갑상선암 또는 동일한 대장점막내암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⑥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피보험

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3항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⑦ 제6항에서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⑧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경우 병원 또는 의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또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 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

- 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 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화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 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3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

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9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 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2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그 날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 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 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6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3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2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6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직접치료 입원비 (제11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 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 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1회 입원당 지급 일수 120일 한도)
기타피부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입원일수
직접치료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	1일당 2만원
입원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1회 입원당 지급
(제11조 제2호)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일수 120일 한도)
제자리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입원일수
직접치료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제자리암의	1일당 2만원
입원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1회 입원당 지급
(제11조 제3호)	입원하였을 경우	일수 120일 한도)
대장점막내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입원일수
직접치료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대장점	1일당 2만원
입원비	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	(1회 입원당 지급
(제11조 제4호)	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일수 120일 한도)
경계성종양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입원일수
직접치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경계성종	1일당 2만원
입원비	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1회 입원당 지급
(제11조 제5호)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일수 120일 한도)
갑상선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입원일수
직접치료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암의	1일당 2만원
입원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1회 입원당 지급
(제11조 제6호)	입원하였을 경우	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73)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5~C26) 중 제8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 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 5)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8조("대장암 중대장 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6)

경계성종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이 리표 그런 미 교려 고기이 해도하시 보면 때느 미사이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1,D47.3
기의 단어로	D47.4,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6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1. 입원비 (제11조 1호에서 제6호)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717710101 2401015HFL COOL OUT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4.0%)
기그기이이 61이이중보다 00이 이내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가산이율(6.0%)
717710101 0101015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 1형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II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암요양병원입원특약(갱신형) I 1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제17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참조]을 말합니다.
-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또는 별표5 "경계성종 양 분류표" 또는 별표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

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 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요양병원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중 국내의 요양병원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요양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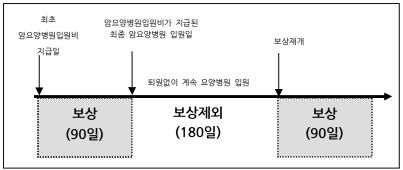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요양병원입원비(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 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암요양병원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요양병원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요양병원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요양병원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요양병원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2 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요양병원 입원으로 보고 각 요양병 원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의 요양병원 입원은 새로운 요양병원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된 최종 요양병원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계속 요양병원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요양병원입원비가 지급된최종 요양병원 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도 그 계속중인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암요양병원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⑦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요양병원 입원을 하는 것을 뜻하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⑨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최초계약 계약일부 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암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비 누적 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암이 완치된 이후 재진단을 받는 경우에 는 동일한 암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암으로 보아 보장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병원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암요양병원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 ③ 제1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제1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 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입·퇴원확인서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2항 제3호의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⑧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7조(특약의 보험기간 간 및 갱신)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⑨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제9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 종료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하며,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8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 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 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 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되거나,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로서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암요양병원입원비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을 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90일 한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

- 1.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제2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특약의 보험 기간 및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 4. 이 특약의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동일한 암으로 인한 암요양병원입원비 누적 지급일수는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암)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97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 5)

경계성종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이 리표 고형 미 교려 고지이 해도야시 보면 ㄸ느 미사이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1,D47.3
/19 602	D47.4,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6)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암요양병원입원비 (제5조) 책임준비금 (제7조 및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경도/중등도치매보장특약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경도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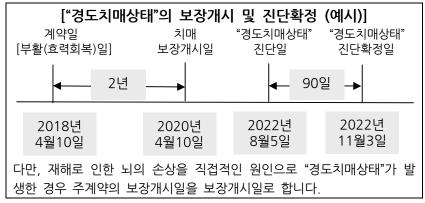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서 "경도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하 "치매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1점(다만,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 ③ "경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 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 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

니다.

"경도치매상태"는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경도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 전문의에 의한 진단 등 객관적인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진단 확 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제1항에서 정한 "경도치매상태"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4조 ("중등도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등도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 (효력회복)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치매 보장 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 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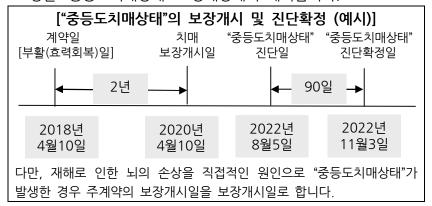
검사 결과가 2점 이상(다만,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의 7등급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 (重症)을 의미합니다.

③ "중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 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 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 니다.

"중등도치매상태"는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전문의에 의한 진단 등 객관적인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제1항에서 정한 "중등도치매상태"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 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경도치매보험금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에 한 함): 중등도치매보험금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경도치매보험금" 및 제2호 "중등도치매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이하 "치매상태"라 합니다)가 진단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 에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경도치매보험금" 및 제2호 "중등도치매보험금"의 경우 "경도치매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중등도치매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보험금"에서 "경도치매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라도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경도치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1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었음에도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에서 정한 "경도치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도 이미 진단받은 "경도치매상태" 가 지속되는 경우
 - 2. "치매 보장개시일"이후 새롭게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이 특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3.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 니다)
- 5. 기타「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비 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 및 제1항 제3호의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4)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주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중등도치매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중등도치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 ⑥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7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로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 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 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 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 니다.
-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치매 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④ 이 특약의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치매 보장개시일"은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치매 보장개시일"은 제 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별표 4)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21조 (적용대상)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부터 제2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까지는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제2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

제2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25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 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을 적용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경도치매보험금 (제5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200만원
지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 보장개시 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 (대5조 제2호)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경도 치매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중등도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경도치매 보험금"을 뺀 차액 지급)		1,000만원

(주)

-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중등 도치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이 특약의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 등도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치매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치매 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라도 "경도치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경도치매보험금" 및 "중등도치매보험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가 진단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드립니다.
- 7. "경도치매보험금" 및 "중등도치매보험금"의 경우 "경도치매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중등도치매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보험금"의 금"에서 "경도치매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경도치매보험금, 중등도치 매보험금(제5조) 및 책임준비금(제7조 및 제11조 제4항)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 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대상포진및통풍보장특약(갱신형) 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대상포진및통풍보장특약(갱신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대상포진및통풍보장특약(갱신형) II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5)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대상포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대상포진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합니다.

제4조 ("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통풍"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통 풍"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통풍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통풍"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임 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 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 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 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대상포진진단보험금(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통풍진단보험금(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에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 갱신계약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은 각 해당 질병의 보장계약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대상포진 또는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5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 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 표5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5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 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강해분류표(별표5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정 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5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계약자가 책임준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

- 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

- 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4.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갱신계약 중 각각의 보장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장계약에 한하여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 2 항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

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⑥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⑧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⑨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제9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8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8조 (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

-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최초계약 이후 갱신되는 갱신계약은 각각「대상포진 보장계약」,「통풍 보장계약」으로 나뉘어 갱신됩니다. 이 경우 갱신계약의 각각의 보장계약을 합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갱신계약 중 각각의 보장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장계약은 제외). 다만, 갱신 전 계약에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계약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당「대상포진 보장계약」,「통풍 보장계약」을 제외하여 갱신되며, 이후의 갱신계약도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

⑦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

- 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 최초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상포진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1항)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에 한함)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 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통풍 진단보험금 (약관 제5조 제2항)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 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 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 50% 감액 지급)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

※ 최초계약 이후 갱신되는 갱신계약은 각각 「대상포진 보장계약」, 「통풍 보장계약」으로 나뉘어 갱신됩니다. 이 경우 갱신계약의 각각의 보장계약을 합하여하나의 계약으로 봅니다(갱신계약 중 각각의 보장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장계약은 제외)

다만, 갱신 전 계약에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계약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해당 「대상포진 보장계약」, 「통풍 보장계약」을 제외하여 갱신되며, 이후의 갱신계약도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포진 보장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에 한함)	50만원

[통풍 보장계약]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 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5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별표 2)

대상포진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 다

대상질병명	분류부호
대상포진	B0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3)

통풍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부호
통풍	M10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5)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 보험금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책임준비금(제7조 및 제13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II를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두번째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II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 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다. 첫번째 뇌출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진단확 정되는 "뇌출혈"[제3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 조]을 말하며 이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한 진단보험 금(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뇌출혈"을 의미 합니다.
 - 라. 두번째 뇌출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

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새롭게 발생한 "뇌출혈"[제3조("뇌출혈"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첫번째 뇌 출혈"에 의한 신경학적 후유증은 "두번째 뇌출혈"로 보지 않습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를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뇌출혈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제1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두번째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두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다만,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두번째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번째 뇌출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소멸(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된 경우에는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5항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이 있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에서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 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4항의 '사망'의 원인 및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제6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⑧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이후 "두 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 이전에 "뇌출혈"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보험료(다만, 갱신전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포함 하지 않습니다)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제4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1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⑩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또는「계약자가 책임준 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하라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 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첫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최종 갱 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5.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⑥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⑦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⑧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⑨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⑩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① 제10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이 발생하였

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로 합니다.

제17조 (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지 않은 경우 갱신되며,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합니다.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호에서 정한 최종 갱 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첫번째 뇌출혈"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최 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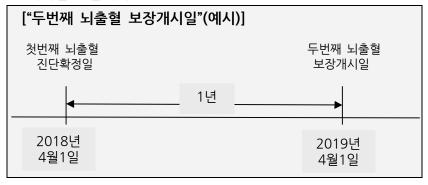
-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5.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에 대한 보장은 100세까지 계속됩니다.
- ③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 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 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

- 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로서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된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 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8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의 구분

구분	보험기간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 받지 않은 경우	3년 (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2년 가능)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00세 만기

(주)

1.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3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입니다.

2. 지급내용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 (제4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뇌출혈"로 진 단확정된 이후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 이 후에 "두번째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 만,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0만원

(주)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제1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첫번째 뇌출혈"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두번째 뇌출혈"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5.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

-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 다.

대상질병명	분류부호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1. 두번째 뇌출혈 진단보험금(제4조)

기 간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기그기이이 (10) 이동비디 00이 이내 기가	+ 가산이율(4.0%)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 형) II 를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두번째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II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다.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진단확정되는 "급성심근경색증"[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을 말하며 이는 주계약 또는 특약 에서 정한 진단보험금(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사 유가 되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의미합니다.
 - 라.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새롭게 발생한 "급성심 근경색증"[제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I23(급성 심 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은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를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급성심 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위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 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제1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다만,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정한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소멸(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된 경우에는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4항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책임준 비금이 있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진단보험금 에서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4항의 '사망'의 원인 및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제6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⑧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갱신전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책임준비금 중 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⑩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1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당합니다.
- ⑩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 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4.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5.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⑤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⑥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⑧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⑨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제9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 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 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또한, 보험가입금액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로 합니다.

제17조 (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 정 되지 않은 경우 갱신되며,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

- 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합니다.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호에서 정한 최종 갱 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 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5.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에 대한 보장은 100세까지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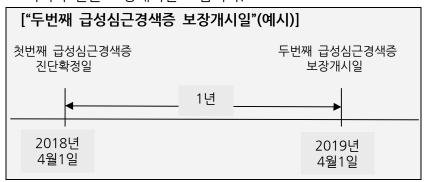
③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로서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된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8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 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의 구분

구분	보험기간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지 않은 경우	3년 (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2년 가능)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100세 만기	

(주)

1.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3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 일입니다.

2. 지급내용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2 11—8 188 1 1,755 2 2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제4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급성심근 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두번째 급성 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급 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

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제1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 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 4.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 5.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1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은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6.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 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

-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부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122
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합병증[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123(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은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1.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제4조)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 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약(갱신형) II**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수술보장특약(갱신형) II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대상이 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분류표"[(별표 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 ③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원"에서 "의사"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 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 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 착수액검사 결과에 일치되게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특징적

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수술"이라 함은 "의사" 에 의하여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 혈관질환"(이하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라 합니다)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특정 행위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될 때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 (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 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姙)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이나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받고, 그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 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4조("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 질환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수술비"[(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 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 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

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강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 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 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계약자가 책임준비금 수 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5)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 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⑥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①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⑩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

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 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8조(특약의 갱신)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8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종피형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녀일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28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8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서 해당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 용됩니다.
- ⑦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

- 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 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 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5)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수술비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 환"을 진단확정받고, 그 "허혈심장 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 을 경우	수술 1회당 200만원

(주)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부호
허혈심장질환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뇌혈관질환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l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4)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참조)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수술비 (제5조), 책임준비금 (제7조 및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입원보장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입원보장특** 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허혈심장질환및뇌혈관질환입원보장특약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7 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대상이 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 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 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자(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심장효소검사, 핵의학검사를 기초로하여야 합니다.
- ③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원"에서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전산화단층술(SPECT), 뇌착수액검사 결과에 일치되게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대상이 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하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진단확정받고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입원비[(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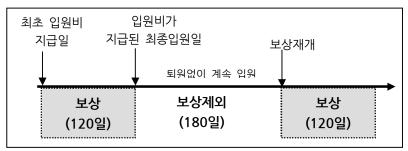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 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

- 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3항, 제15항 및 제18항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 ⑥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⑦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비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허 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 16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 제17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허혈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의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 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비

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5)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⑧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 ⑨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 일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 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특

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7조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 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 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화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화급

-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에게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1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별표 5)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2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100 1 1,11 1 2 2 7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입원비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진단확정받 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1일 이상 "입 원"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주)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부호
허혈심장질환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뇌혈관질환	
1. 지주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l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허혈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입원비 (제5조), 책임준비금 (제7조 및 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1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약 관 (주피형, 종피형)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보장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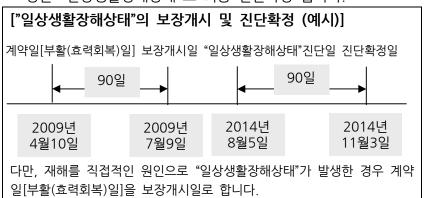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제16 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서 정한「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이하「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이라합니다)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해당되며 그 상태가「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1.「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 2. 다음 (가)~(라)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 (가) 식사하기
 - (나) 화장실 사용하기
 - (다) 목욕하기
 - (라) 옷입기
- ② 제1항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유형 및 「타인의 완전한 도움」 판단기준표(별표 4 참조) 에서 정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를 말합니다.
- ③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자[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제4조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서 정한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이하「중증치매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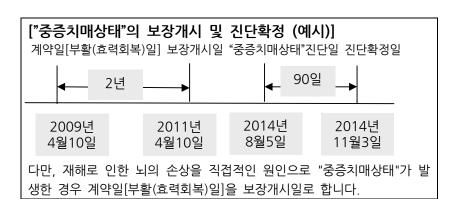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③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 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 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 니다.

"중증치매상태"는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 전문의에 의한 진단 등 객관적인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장기간병자금(다만, 장기간병자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강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장기간병자금의 경우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진단되고 보험기간 이 종료되더라도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최종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장기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 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 니다)
- 4. 기타「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계약자가 책임준비 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5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간병자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 ⑥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⑦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7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로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 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

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 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 니다.
-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되는 경우

3.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제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중증치매 보 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우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장기간병자 금의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일상생활장해상태"에 대한 "일상생활장해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하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2.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하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을 "중증치매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 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 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단,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

- 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화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21조 (적용대상)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부터 제2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까지는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제2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

제2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제25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 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6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을 적용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장기간병자금 (제5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 따라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중증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 따라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장기간병자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해 1회에 한하여지급합니다)	1,0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장기간병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 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이 특약의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며,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되거 나, 중증치매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되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장기간병자금은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및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 따라 발생한 경우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가 진단되고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최종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장기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참조)

(별표 4)

「일상생활 기본동작」유형 및「타인의 완전한 도움」판단기준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유형의 판단 기준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형	판단기준
이동하기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다.(예를 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들것에 실리거나 업혀야만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식사하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거나, 현재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수액을 통해 부분적인 혹은 전적인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야 다음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을 할 수 있다. ①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 그리고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 ② 실내용 변기(혹은 요강)를 사용하고 비우는 일 ③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예를 들면, 유치(留置) 카테터 등)나 외과적 시술물(예를 들면, 결장루 등)을 사용하는 일
목욕하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샤워·목욕을 전혀할 수 없다.
옷입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장기간병자금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제5조) 및 책임준비금 (제7조 및 제11조 제4항)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 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입원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입원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4)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합니다)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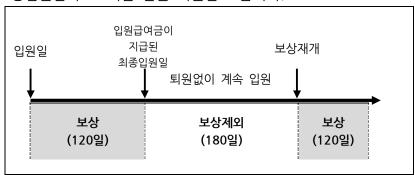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질병재해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 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제11조(피보 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계속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 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1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 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확인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 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 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⑦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이 약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 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 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 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 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재해 입원급여금 (제4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120일 한도)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 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과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1. 질병재해입원급여금 (제4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	약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하는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CI보장특약II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CI보장특약॥를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CI보장특약 II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3(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중대한 질병", "유방암"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 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 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 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50(유방의 악성 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5("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말합니다.
- ④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합니다)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4조 ("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6("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

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또는 제 1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CI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약정한 CI보험금의 50% (다만, 여성에 한해 가입 후 180일("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90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약정한 CI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중대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CI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항의 '사망'의 원인 및 'CI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⑤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CI보험금의 50%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다만, 유방암의 경우 가입 후 180일("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90일) 이전에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CI보험금의 10%를 지급(다만, 여성에 한함)합니다.
- ⑥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9항에서 계약 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적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 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⑨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⑩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 ① 제10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⑯ 제1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7(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CI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

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7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1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보장 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이 하 "보장개시일" 이라 합니다)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 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P	(716 - 774671667 1,000667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CI보험금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 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 단확정을 받았을 때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CI보험금은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과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중 최초 1회에한하여 지급합니다)	1,000만원 (다만, "중대한 질병" 및 "중 대한 수술"의 경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지급) ※ 유방암의 경우 가입 후 180일("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90일) 이 전에 진단확정된 경우 위의 금액의 10%지급(다만, 여성 에 한함)	

(주)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이 특약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다만, "중대한 화상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입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또는 CI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 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I.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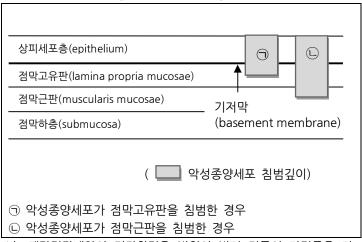
-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1. 다음의 가. ~ 사. 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 가. 피부의 악성 흑색종(C43)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 류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 나.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C44)
 - 다.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C61) 중 초기 전립선암(본 상품의 "초 기 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₀ 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 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중대한 갑상선암 정의]

- 1)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갑상 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 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 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2) '1)'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 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 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3) '1)'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마. 림프성 백혈병(C91) 중 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초기 만성

-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 RAI Stage 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병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장합니다)
- 사.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 2.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신생물(In situ neoplasms)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 4.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
 - 가.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나.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 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 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II.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 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 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가.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 혀
 - 나. CK-MB를 포함한 심장효소의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위의 ①의 가. ~ 나. 중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 외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 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 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④ 또한, 위의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scan) 등을 기

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위의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진단된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r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III. 중대한 뇌졸중 (Critical Stroke)

-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 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 ③ "중대한 뇌콜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 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위의 ① ~ 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CT)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⑤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 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외상에 의한 경우
 -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 라.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IV. 말기신부전증 (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 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 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V.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 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합니 다.

VI.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①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상태로서, 다음의 두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 량(FEV1.0)이 모두 정상예측치의 30% 미만
 - 나. 호흡곤란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mMRC 호흡곤란 점수가 2점 이 상이거나 CAT(COPD 평가검사) 점수가 10점 이상
- ② 폐기능 검사 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 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폐기능 검사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폐기능 검사의 정도관리기준 중 적합성평가 (within-manoeuvre evaluation)와 재현성평가(between-manoeuvre criteria)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③ "말기 폐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와 함께 호흡기내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확인된 문서화된 mMRC 호흡 점수 또는 CAT 점수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①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특발성으로 혹은 가족성(유전성)으로 평균 폐동맥의 혈압이 안정시 25mmHg 이상 또는 운동시 30mmHg 이상으로 높아져 그 결과,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폐기능의 장애'가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127.0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폐질환, 심장질환, 결합조직질환 등 다른 원인 질환(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②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확정은 병력, 폐 환기관류스캔, 폐동맥조 영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심초음파검 사, 심도자검사, 운동능력검사, 폐동맥반응성 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해 당분야 전문의(심장전문의 또는 호흡기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중증 세균성수막염

- ① "중증 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병인 경우의 세균성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분류부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 가.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 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 나. 동시에 아래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과 함께 그 결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이라 함은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

- 두증(hydrocephalus), 뇌농양(brain absces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trophy),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기형(megacisterna magna), 국소적 허혈(focal infarction), 작은종괴(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 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sign)으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IX. 다발경화증

- ① "다발경화증"이라 함은 중추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겨서 탈수초 및 축삭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회복 되기를 반복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 ② "다발경화증"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이 나타나야 하며, 뇌척수액검 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다발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_	= 0 1 1:	
	대상질병	분류부호
	다발경화증	G3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X.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근육약화 및 근위축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기타 근병증(G72) 및 기타 척수성 근위 축및 관련 증후군(G12.8)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해 세계신경과학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 진단기준처럼 임상의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단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별표 5)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 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hird Degree Burns and Corrosions)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 (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한 수술"의 정의

I.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 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 (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축상반 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II.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흥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 (excision)하고 인조혈관(artificial vessel)으로 치환(graft)하는 두가지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②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Ⅲ. 심장판막수술 (Heart Valve Surgery)

-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 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 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IV. 5대장기이식수술 (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수술을 말합니다.
-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별표 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0조 제2항 관련)

1. CI보험금 (제5조)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0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두번보장CI특약(갱신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다. 두번째 CI
 - "두번째 CI"는 "두번째 다른 분류의 CI"와 "두번째 중대한 암"을 말하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1) 두번째 다른 분류의 CI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의 "첫번째 CI보험금"(이하 "첫번째 CI보험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와 다른 분류[제3조("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대한 수술"의 분류) 참조]에 속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또는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2) 두번째 중대한 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로 "중대한 질병" 중 "중대한 암"(이하 "첫번째 중대한 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두번째 중대한 암"의 정의(별표 7 "두번째 중대한 암"의 정의 참조)에 해당하는 암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대한 수술"의 분류)

이 특약에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및 "중대한 수술"은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구분	보장대상		
제1분류	중대한 암		
제2분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말기신부전증, 심장/신장이식수술		
제3분류	심장판막수술		
제4분류	말기폐질환, 폐장이식수술		
제5분류	말기간질환, 간장이식수술		
제6분류	췌장이식수술		
제7분류	중대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제8분류	중증 세균성수막염		
제9분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제10분류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다발경화증		

제4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4) "중대한 질병" 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

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 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에서 제7차 개 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50[유방의 악성 신 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 5)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말합니다.
- ④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5조 ("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 6) "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심장 및 신장 장기이식수술", "폐 장기이식수술", "가 장기이식수술", "췌장 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첫번째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 : 첫번째 CI보험금 (다만, 첫번째 CI보험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분류의 CI"로 진단확정 되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항에서 정한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 일"(이하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 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 두번째 CI보험금 (다만, 두번째 CI보험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제2호의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 : 사망보험금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

- 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 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④ 이 특약의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14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 14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항 제 2 호 및 제 6 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 3 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 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제4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첫번째 CI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⑦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 제6항의 '사망'의 원인 및 "첫번째 CI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⑧ 제7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첫번째 CI보험금"의 50%만지급합니다. 다만, 유방암의 경우 가입 후 180일("중대한 질병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 90일)이전에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첫번째 CI보험금"의 10%를 지급(다만, 여성에 한합니다)합니다.
- ⑩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⑪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8항에서 계약자가 계 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 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 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 대한 암"으로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첫번째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 도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첫번째 중 대한 암"으로 간주하여 제3항 및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 라 보장합니다.
- ② 제11항의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 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 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

- 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2항의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④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두번째 중대한 암 보 장개시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두번째 CI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미만에 "중대한 암"이 진단(이하 "중대한 암[A1]"이라 합니다)되는 경우 다만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중대한 암[A1]"의 치료 또는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이 없고 이후 다시 "중대한 암[A1]"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중대한 암[A1]"이 진단되고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 확정 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중대한 암"이 진단확정(이하 "중대 한 암[A2]"이라 합니다)된 경우라도 그 "중대한 암[A2]"이 위 의 제1호의 "중대한 암[A1]"이 존재하는 기관(organ)[별표8 "기관(organ) 분류표" 참조]과 동일한 기관(organ)에 있는 경 우
- (5)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첫번째 중대한 암"과 동일한 기관(organ)에 "중대한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간주하여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① 제1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 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 표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2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3 참

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정 도에 따라 강해분류표(별표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나.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CI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 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

- 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 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깁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3.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3.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 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 닙니다.
- 4.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갱신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9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시에는 제외)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 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 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9 조(특약의 갱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갱신)

- ① 이 특약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만기로 갱신되며, 갱신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2.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일로 합니다.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호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5.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

- 약에 대한 보장은 종신까지 계속됩니다.
- ③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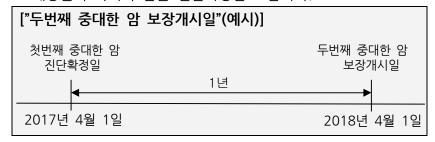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그러나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

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⑥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두번째 CI보험금" 중 "두 번째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

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0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따 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6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4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9)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의 구분

구분	보험기간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CI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다만, 최종 갱신계약은 1년 또는 2년 가능)
최초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첫번째 CI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신

(주)

^{1.}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100세 계약해당일입 니다.

2. 지급내용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첫번째 CI보험금 (제6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로 "중 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 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 일" 이후에 첫번째로 "중대한 질병"으 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첫번째 CI보험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0만원 (다만,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의 경 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50% 감액지급) ※ 유방암의 경우 가입 후 180일("중대한 질 병 및 수술 보장개시 일" 이후 90일) 이전 에 진단확정되었을 경 우 위 금액의 10% 지급 (다만, 여성에 한함)
두번째 CI보험금 (제6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두 번째 다른 분류의 CI"로 진단확정 되거 나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두번째 중 대한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 만, 두번째 CI보험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000만원
사망보험금 (제6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첫번째 CI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두 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 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제1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위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보험금 감 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4. 이 특약의 "첫번째 CI보험금"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에 대한 보장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입니다]
- 5. 이 특약의 "두번째 CI보험금"중 "두번째 중대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6.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 7.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8. 이 특약의 "첫번째 CI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여 이 특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 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I.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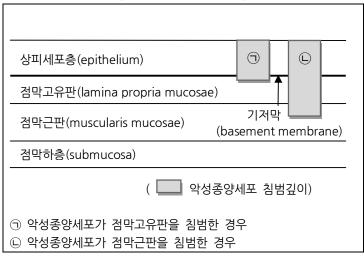
-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1. 다음의 가. ~ 사. 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 가. 피부의 악성 흑색종(C43)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 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 나.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C44)
 - 다.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C61) 중 초기 전립선암(본 상품의 "초 기 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₀ 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 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 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중대한 갑상선암 정의]

- 1)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갑상 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 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 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2) '1)'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3) '1)'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마. 림프성 백혈병(C91) 중 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초기 만성

-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 RAI Stage 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병과 관 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는 보장합니다)
- 사. 특약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 나 전이된 경우
- 2.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신생물(In situ neoplasms)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 4.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
 - 가.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나.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 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 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II.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 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 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가.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나. CK-MB를 포함한 심장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위 ①의 가. ~ 나. 중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④ 또한, 위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학 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scan)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위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진단된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손상 (myocardialmicroinfar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III. 중대한 뇌졸중 (Critical Stroke)

-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 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 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 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 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위의 ① ~ 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⑤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 허혈성 신경학적 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외상에 의한 경우
 -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 라. 신경학적 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IV. 말기신부전증 (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 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 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V.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합니다.

VI.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①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상태로서, 다음의 두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 량(FEV1.0)이 모두 정상예측치의 30% 미만
 - 나. 호흡곤란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mMRC 호흡곤란 점수가 2점 이 상이거나 CAT(COPD 평가검사) 점수가 10점 이상
- ② 폐기능 검사 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 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폐기능 검사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폐기능 검사의 정도관리기준 중 적합성평가 (within-manoeuvre evaluation)와 재현성평가(between-manoeuvre criteria)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③ "말기 폐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와 함께 호흡기내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확인된 문서화된 mMRC 호흡 점 수 또는 CAT 점수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①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특발성으로 혹은 가족성(유전성)으로 평균 폐동맥의 혈압이 안정시 25mmHg 이상 또는 운동시 30mmHg 이상으로 높아져 그 결과,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폐기능의 장애'가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127.0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폐질환, 심장질환, 결합조직질환 등 다른 원인 질환(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②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확정은 병력, 폐 환기관류스캔, 폐동맥조 영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심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운동능력검사, 폐동맥반응성 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 야 전문의(심장전문의 또는 호흡기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중증 세균성수막염

- ① "중증 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병인 경우의 세균성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분류부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 가.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 나. 동시에 아래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과 함께 그 결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이라 함은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

증(hydrocephalus), 뇌농양(brain absces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trophy),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기형 (megacisterna magna), 국소적 허혈(focal infarction), 작은종괴(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 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①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3)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IX. 다발경화증

- ① "다발경화증"이라 함은 중추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겨서 탈수초 및 축삭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회복되 기를 반복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 ② "다발경화증"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이 나타나야 하며, 뇌척수액검 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다발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1 •	
대상질병	분류부호
다발경화증	G3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X.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근육약화 및 근위축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 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기타 근병증(G72) 및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8)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해 세계신경과학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 진단기준처럼 임상의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단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 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hird Degree Burns and Corrosions)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 (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한 수술"의 정의

I.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 (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 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 (遠位部)의 관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축상반절 제술(Rotational atherectomy)

II.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 (excision)하고 인조혈관(artificial vessel)으로 치환(graft)하는 두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②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 -sm repair)

Ⅲ. 심장판막수술 (Heart Valve Surgery)

-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 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 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IV. 5대장기이식수술 (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수술을 말합니다.
-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두번째 중대한 암"의 정의

"두번째 중대한 암"이란,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중 I. 중대한 암(critical cancer)에 해당하며, 첫번째 중대한 암 진단확정일부터 1년(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별표8) "기관(organ) 분류표" 참조]과 다른 '기관(organ)'에 진단확정된 두번째 암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 합니다.

- 1. 첫번째 중대한 암 진단확정일부터 1년(12개월) 미만에, 중대한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
- 2.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과 같은 '기관(organ)'에, 중대한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
- 3.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이 두 개 이상(예: 첫번째 중대한 암이 위(stomach)와 간(liver)에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인 경우, 그 기 관들과 같은 기관(들)(예: 위 및/또는 간)에만 중대한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
- 4.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중피성 및 연조직'[(별표8) "기관(organ) 분류표" 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
- 5. 첫번째 중대한 암으로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별표8) "기관(organ) 분류표" 참조]에 침윤 또는 전이(metastasis)된 경우(C77 포함)
- 6. 첫번째 중대한 암이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별표8) "기 관(organ) 분류표" 참조]의 암(예: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등)으로 진단확정되고, 중대한 암이 다시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관(organ) 분류표"

아래 표의 "분류부호 예시"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에서 명명된 각 개별 기관에 발생하는 악성 신생물(암)을 예시 한 것입니다.

생물(A)을 에서 한 것입니다. 개별 기관(organ) 분류	분류부호 예시	대분류	
1. 입술	C00		
2. 혀(혓바닥, 혀의 기타 부위)	C01, C02		
3. 잇몸	C03		
4. 입바닥	C04		
5. 구개	C05		
6. 기타 구강 부위 및 '입술, 구강 및 인두'내 기타 기관	C06, C14	입술, 구강 및 인두	
7. 귀밑샘	C07		
8. 기타 주침샘	C08		
9. 편도	C09		
10. 인두(입인두, 비인두, 이상동(梨狀洞),	C10, C11,		
하인두 포함)	C12, C13		
11. 식도	C15		
12. 위	C16		
13. 소장	C17		
 14. 직결장(직장구불결장 이행부 포함) 및	C18, C19,		
14. 역설성(역성구물설성 이영구 포함/ 및 '소화기관'내 기타 기관	C20, C26		
	(C26.1 제외)	소화기관	
15. 항문 및 항문관	C21		
16. 간 및 간내 담관	C22		
17. 담낭	C23		
18. 기타 담도 부위	C24		
19. 췌장이자	C25		
20. 비강 및 중이	C30	호흡기 및	
21. 부비동	C31	흉곽내 기관	

22. 후두	C32	
23. 기관(氣管)	C33	
24. 기관지 및 폐 및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내 기타 기관	C34, C39	
25. 흉선	C37	
26. 심장, 종격 및 흉막	C38	
27. 뼈, 관절연골	C40, C41	뼈 및 관절연골
28. 피부	C43, C44	피부
29. 중피,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 후복막	C45, C47,	중피성 및
및 복막, 기타 결합 및 연조직	C48, C49	연조직
30. 유방	C50	유방
31. 외음	C51	
32. 질	C52	
33. 자궁(자궁경부, 자궁체부, 기타 자궁부	C53, C54,	여성
분) 및 '여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C55, C57	생식기관
34. 난소	C56	
35. 태반	C58	
36. 음경	C60	1 644
37. 전립선 및 '남성 생식기관'내 기타 기관	C61, C63	남성 생식기관
38. 고환	C62	생식기관
	C64, C65,	
39. 신장, 신우 및 '비뇨기관'내 기타 기관	C68	요루
40. 요관	C66	五上
41. 방광	C67	
42. 눈 및 눈부속기	C69	
43. 수막	C70	눈, 뇌 및
44. 뇌	C71	중추신경계
45. 척수, 뇌신경 및 기타 중추신경 부위	C72	
46. 갑상선	C73	
47. 부신	C74	내분비선
48. 기타 내분비선	C75	

49. 비장 및 골수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C81-C96, C26.1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비장 및 골수 를 포함한 혈액 및 림프계
------------------------------	---	---------------------------------

(주)

- 1. 위의 분류부호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 중대한 암의 경우 (C46, C76-C80, C97, U99), 회사는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기관(organ)'을 병원 기록 또는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를 통해, 이 특약에서 정의하는 '기관(organ) 분류표'에 있는 각 개별 '기관(organ)'으로 분류합니다.
- 2. 위의 분류부호 예시 중 C73에 해당하는 암 중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을 제외한 갑상선암 및 C44에 해당하는 암인 경우,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3.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8~C20) 중 (별표4) "중대한 질병"의 정의 I.중 대한 암 ①항 4호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4. 인체내에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기관인 경우,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 같은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기관(organ) (예: 좌측 및 우측 유방, 신장, 고환, 폐, 요관, 난소, 부신, 눈, 부갑상선 등)은 같은 '기관 (organ)'으로 분류합니다.
- 5.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위의 "분류부호 예시"이 외에 개별 '기관(organ)'에 해당하는 분류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류부호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첫번째 CI보험금, 두번째 CI보험금 및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사망보험금 (제6조 제1호에서 제3호)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 급금 (제2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균공 시이율 의 50%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약[암] 2형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약[암] 2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CI추가보장관련특약[암] 2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3(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제20조(특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소액치료비 관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소액치료비 관련 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 및 제3항에서 정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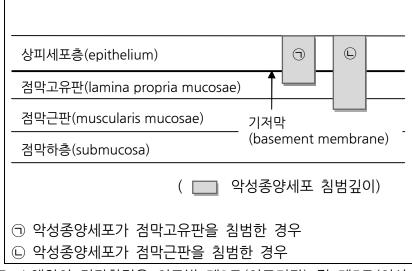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초기악성흑색종", "기타피부암", "초기전립선암", "초기만성림 프구성백혈병" 및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암" 을 말합니다.
 - 1. "초기악성흑색종"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 분류 중 분류부호 C43(피부의 악성 흑색종)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 가 1.5mm이하인 경우)경우를 말합니다.
- 2.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초기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중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 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₀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이하인 모든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4. "초기만성림프구성백혈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91(림프성 백혈병)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이고 RAI stage 0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악성종양(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병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

다.(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 ④ 소액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⑤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3조("소액치료비 관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암,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과는 구분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에 해 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갑상선암(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병과 관련된 갑상선암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2. 중대한 갑상선암

- 가.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 에서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나. '가'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 다. '가'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 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제7조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수 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 「양성뇌종양 분류표(경계성종 양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 기형은 보장대상에서 제외)
- ②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7 「"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보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 "다발경화증",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말합니다.
- ②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9조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 함은 별표8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말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 확정은 병원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0조 ("중대한 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9 「"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료비 관련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 소액치료비 관련 암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 단확정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지급(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

단확정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지급(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확정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 : 양성뇌종양 진단보험금 지급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며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 단확정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제1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제22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 개시) 제4항에서 정한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

았을 경우 또는 제22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 항에서 정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 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소액치료비 관련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5호의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2항의 '사망'의 원인 및 '진단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 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 에는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⑤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5호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① 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이 발생하였으나 제18항에서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중대한 암"으로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확정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9) 제17항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9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9항의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하라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 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9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

-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가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수술"에 대한 보 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2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2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6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7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치료비 관련 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	100만원
진단보험금	료비 관련 암"으로 진단확정 받	(다만, 가입 후 1년
(약관 제11조 제1	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미만 진단확정된 경
호)	확정에 한함)	우 50% 감액 지급)
제자리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	100만원
진단보험금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다	(다만, 가입 후 1년
(약관 제11조 제2	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	미만 진단확정된 경
호)	함)	우 50% 감액 지급)
경계성종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	200만원
진단보험금	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다만, 가입 후 1년
(약관 제11조 제3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미만 진단확정된 경
호)	한함)	우 50% 감액 지급)
갑상선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	400만원
진단보험금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다	(다만, 가입 후 1년
(약관 제11조 제4	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	미만 진단확정된 경
호)	함)	우 50% 감액 지급)
양성뇌종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	300만원
진단보험금	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	(다만, 가입 후 1년
(약관 제11조 제5	단확정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	미만 진단확정된 경
호)	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우 50% 감액 지급)

(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중대한 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 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3조 ("소액치료비 관련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경계성종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D47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1,D47.3 D47.4,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성뇌종양 분류표(경계성종양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4.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3
5.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D35.4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대한 질병"의 정의

I. 중대한 암 (Critical C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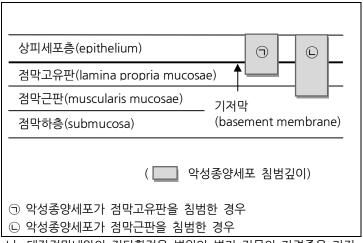
-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1. 다음의 가. ~ 사. 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 가. 피부의 악성 흑색종(C43)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Breslow 분류 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 나.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C44)
 - 다.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C61) 중 초기 전립선암(본 상품의 "초 기 전립선암"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₀ 이하 또는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 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 머지 <u>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u>

[중대한 갑상선암 정의]

- 1)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갑상 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 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 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2) '1)'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3) '1)'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 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야 합니다.
- 마. 림프성 백혈병(C91) 중 초기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초기 만성

- 림프구성 백혈병"이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중 RAI Stage 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병과 관련된 악성 종양(단, 의료법에 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병과 관 련된 악성종양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는 보장합니다)
- 사.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 2.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제자리신생물(In situ neoplasms)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 4.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
 - 가.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나.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II.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의 폐색으로 말미 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 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가.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T파,Q파)가 새롭게 출현나. CK-MB를 포함한 심장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
-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변형 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위의 ①의 가. ~ 나. 중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장에서 제 외합니다. 예를들면, 혈액중 심장효소검사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 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④ 또한, 위의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심초음파 검사나 핵의

학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scan) 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위의 ①의 가. ~ 나. 를 기초로 하지 않고 진단된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손상(myocardial microinfar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Ⅲ. 중대한 뇌졸중 (Critical Stroke)

-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 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이 나타나는 질 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가.장해의 분류 1) 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 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 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 치되게 "중대한 뇌졸중"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위의 ① ~ ③에 모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를들면,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린다든지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만으로 "뇌졸중"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⑤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 (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외상에 의한 경우
 - 나.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 다.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 라.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폐색

IV. 말기신부전증 (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 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 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V.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질환 중에서 영구적인 황달, 복수, 뇌병증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합니다.

VI.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 ① "말기 폐질환"이라 함은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이 악화되어 폐가 심한 비가역적인 기능 부전을 보이는 상태로서, 다음의 두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가.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 량(FEV1 0)이 모두 정상예측치의 30% 미만
 - 나. 호흡곤란 증상을 평가하는 지표인 mMRC 호흡곤란 점수가 2점 이 상이거나 CAT(COPD 평가검사) 점수가 10점 이상
- ② 폐기능 검사 성적은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 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폐기능 검사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폐기능 검사의 정도관리기준 중 적합성평가 (within-manoeuvre evaluation)와 재현성평가(between-manoeuvre criteria)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③ "말기 폐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와 함께 호흡기내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확인된 문서화된 mMRC 호흡 점수 또는 CAT 점수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Ⅶ.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①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특발성으로 혹은 가족성(유전성)으로 평균 폐동맥의 혈압이 안정시

25mmHg 이상 또는 운동시 30mmHg 이상으로 높아져 그 결과,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심폐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127.0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다만, 폐질환, 심장질환, 결합조직질환 등 다른 원인 질환(기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성 폐동맥 고혈압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②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의 진단확정은 병력, 폐 환기관류스캔, 폐동맥조 영검사,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심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운동능력검사, 폐동맥반응성 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 야 전문의(심장전문의 또는 호흡기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중증 세균성수막염

- ① "중증 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HIV병인 경우의 세균성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분류부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 가.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 나. 동시에 아래와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견(sign)과 함께 그 결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치과 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② 위 ①의 "영상의학적 검사상의 이상소건(sign)"이라 함은 전산화단층촬영 (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 증(hydrocephalus), 뇌농양(brain absces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위축(brain atrophy), 경막하혈종(subdural hematoma), 뇌기형 (megacisterna magna), 국소적 허혈(focal infarction), 작은종괴(mass),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 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소견(sign)으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1)및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IX. 다발경화증

- ① "다발경화증"이라 함은 중추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신경세포들의 수초와 축삭에 염증이 생겨서 탈수초 및 축삭 손상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회복되 기를 반복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 ② "다발경화증"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을 통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이 나타나야 하며, 뇌척수액검 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검사(Brain E-P)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분야 전문의(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근거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다발경화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1 11		
대상질병	분류부호	
다발경화증	G3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X.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근육약화 및 근위축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 진행성인 신경학적 결손'이나타나야 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부호
가족성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0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근육의 원발성 장애(G71), 기타 근병증(G72) 및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8)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해 세계신경과학회(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1998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이 진단기준처럼 임상의학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단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정의

- 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hird Degree Burns and Corrosions)
 -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라 함은 「9의 법칙 (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중대한 수술"의 정의

I.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Coronary Artery Bypass Graft)

- ①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심장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 상동맥(심장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 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II.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 (Aorta Graft Surgery)

- 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 병소를 절제 (excision)하고 인조혈관(artificial vessel)으로 치환(graft)하는 두가지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②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 -sm repair)

Ⅲ. 심장판막수술 (Heart Valve Surgery)

-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 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 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IV. 5대장기이식수술 (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간장,신장,심장,췌장,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사망자를 모두 포함합니다)의 내부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② 단, 랑게르한스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별표 10)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6조 제2항 및 제26조 제2항 관련)

1. 진단보험금 (제11조 제1호에서 제5호)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6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까지의 기간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 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 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제2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특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③ 제11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

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약보험가입금액의
(제3조)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

(주)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1. 재해사망보험금 (제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8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 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1형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상해특약 1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 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제1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 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설명]

가입 전 : 팔에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

가입 후 : 동일한 재해로 팔에 장해지급률 50%가

가중되어 80%의 장해상태

이 경우 팔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나, 가입 전 장해지급률 30%를 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금을 지급

- ⑬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

- 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특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5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 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액
재해강해급여금 (제3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 장해지급률

(취)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1. 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7[그기이이 61이 이후버티 00이 이네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8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2형 약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2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장해연금특약 2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다. 적용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에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이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 이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라.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

-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 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⑦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 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⑧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 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다른 재해로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1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연금을 빼고지급합니다.
 -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위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설명]

가입 전 : 팔에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

가입 후 : 동일한 재해로 팔에 장해지급률 50%가

가중되어 80%의 장해상태

- 이 경우 팔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나, 가입 전 장해지급률 30%를 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지급
- ③ 제1항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⑭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은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발생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합니다. 다만,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2차년도 이후의 재해장

해연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 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특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1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 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절차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5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 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 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재해	3,000만원 대년 가입금 재해 X 10회(1,000만원	300만원
장해연금	지급사유			
(제3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장해분 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이며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총 지급금액	지급기준	가입금액	1회 지급액
	1,500만원	매년 가입금액의 15% X 10회(확정지급)	1,000만원	150만원

- (취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거나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재해장해연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1. 초년도 재해장해연금 (제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시합기술의 31월 이후구나 60월 이내 기신	+ 가산이율(4.0%)
기그기이이 61이 이중비디 00이 이내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급기글의 되글 이웃 기진 	+ 가산이율(8.0%)

2. 2차년도 이후 재해장해연금 (제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않게 된 기 않게 된 보이 이내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않게 된 날) 이후	평균공시이율 1년 이내 : 평균공 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3. 해지환급금 (제18조 제1항)

11 12 2 2 (11 12 2)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주)

- 1. 2차년도 이후 재해장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고도장해보장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고도장해보장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고도장해보장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 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고도장해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⑩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고도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1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

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계약자 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 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고도장해 보험금 (제3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1. 고도장해보험금 (제3조)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19조 제1항)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재해치료비특약 [1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 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을 경우
 - : 골절치료급여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 2.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 술을 받았을 경우
 - : 재해수술급여금(수술1회당)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 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 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따라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

-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수술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 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깁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1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

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3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 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9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귀장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0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골절치료 급여금 (제4조 제1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이 발생하였 을 경우	골절발생 1회당 30만원
재해수술 급여금 (제4조 제2호)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 았을 경우	수술1회당 3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 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 ※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척추 및 척수의 출산 손상	P11.5
2.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3.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4.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5.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6.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 골절	P13.4
7.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8.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S02 (S02.5는 제외)
10. 목의 골절	S12
11.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1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1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14. 아래팔의 골절	S52
15.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6. 대퇴골의 골절	S72
1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8.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20.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분류항목	분류부호
2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2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2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4)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골절치료급여금 등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 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 급금 (제19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골절치료특약II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골절치료특약II를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골절치료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 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 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골절치료급여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 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 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따라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별표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별표4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

- 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 지급사유 및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9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0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 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 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 키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 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를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골절치료 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이 발생하였 을 경우	골절발생 1회당 30만원

-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 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 니다.
- ※ 골절치료급여금의 경우 동일한 재해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재해발생 1회당 1회의 골절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척추 및 척수의 출산 손상	P11.5
2.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3.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4.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5.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6.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 골절	P13.4
7.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8.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S02 (S02.5는 제외)
10. 목의 골절	S12
11.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1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1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14. 아래팔의 골절	S52
15.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6. 대퇴골의 골절	S72
1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8.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20.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분류항목	분류부호
2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2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2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4)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골절치료급여금 (제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 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 한급금 (제18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 II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 II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플러스수술특약(갱신형) 1 1형 약관(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4)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 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2)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합니다. 이 때 행위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될 때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姙) 목적의 수 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이나 검사 및 진단을 위 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행위에서 제 외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3조("수술"의 정의 와 장소)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수술비((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4 "장해분류 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 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 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 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

- 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 위로 봅니다.
- ⑤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⑦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 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7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7조 (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

-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종피형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녀일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28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28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⑥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 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

-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	금액
	수술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1회당	
수술비 (약관 제4조)		수술의 종류	지급 금액	
		1종	10만원	
	중 수술을 받았을 경우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	

(주)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비를 지 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 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제2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별표 2)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수술분류표〉

I. 일반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1. 피부이식수술(25㎡이상인 경우) 및 피판수 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종
	2. 피부이식수술(25㎡미만인 경우)	1종
#IH OHIO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종
피부, 유방의 수술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60일이 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1종
	5. 골(骨) 이식수술	2종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등 내고정물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 顎骨) · 하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종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 · 치은 · 치근(齒根) ·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함]	1종
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 關節) 관혈수술	2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종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종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 수술은 제외함)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관절의 이 단(離斷)에 수반하는것]	1종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종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 (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 반하는 것]	3종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종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 (四肢關節) 관혈수술	2종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 혈수술	1종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 本手術)	1종
호흡기계,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종
흉부(胸部)의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종
수술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수술(開胸手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 에 한함]	5종
호흡기계,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종
흥부(胸部)의 수술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수술을 수반하는 것]	4종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 락은 제외)	3종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 관혈수술	1종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폐동맥 (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종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종
	26. 심장내(直視下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종
	27. 심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5종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 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 入術)	3종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종
	30. 이하선 절제수술	3종
소화기계의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종
수술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 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종
	33. 위 절제수술 (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종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 을 수반하는 것]	3종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 을 수반하는 것]	4종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 을 수반하는 것]	3종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종
소화기계의 수술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종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종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종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 강봉축술(盲腸縫縮術)"	2종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종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 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 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 함]	1종
	45. 신장(腎臟),방광(膀胱),신우(腎盂),요관 (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종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종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종
비뇨기계 · 생식기계의 수술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종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종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50.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 (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 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종
	51. 음낭관혈수술	1종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단, 제왕절개 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종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수술개시일 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 이 가능함)	1종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종
	55. 질탈(膣脫)근본수술	1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종
내분비기계의 수술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종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종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종
신경계의 수술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종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종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종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종
시각기의 수술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종
[약물주입술은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종
제외]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종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종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종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종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종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종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 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 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 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2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시각기의 수술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 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1종
[약물주입술은 제외]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2종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3종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종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 (異物除去手術)	1종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종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 은 제외]	2종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종
청각기(聽覺器)의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종
수술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 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 함]	1종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종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종

구분	수술 名	수술
		종류
상기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종
이외의 수술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종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 함하지 않음]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 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종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고주파 전극 등 에 의한 경피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 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88-1. 뇌, 심장	3종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 (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종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종

(주) 위의 1~87항의 수술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 (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 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 名	수술 종류
1. 관혈적 악성 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5종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1-1. 기타피부암(C44)	3종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 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3종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	
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 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3종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	20
로 반복 지급이 가능함)	

- (주) 1. 제자리암 · 경계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이식술(일련의 과정 '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을 제외한 근치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Ⅲ. 악성 신생물 근치 · 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 名	수술 종류
1. 악성 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3종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	っぷ
선 치료	3종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사용 지침]

-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행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体)에 절단(切断),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剤) 등의 조치 및 신경(神経)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4. '관혈적 악성 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 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 입니다.

5.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위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의 수술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인 경우에는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중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악성 신생물의 경우는 '악성 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 발생되는 가느다란 방사선 이용)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 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4)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1. 수술비 (제4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가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New 무배당암진단특약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New 무배당암진단특약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New 무배당암진단특약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강해: (별표3) "강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강해상 태를 말합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제17조(특약의 보험기간) 참조]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하며, 평균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및 전립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이하, "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제4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5조("특정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갑상선암, 제6조("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갑상선암, 제6조("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 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 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 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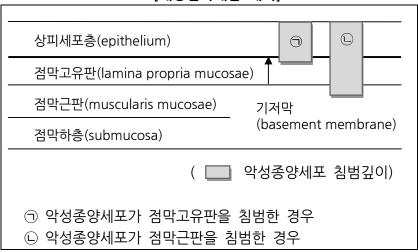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 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특정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에서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 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 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 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6조 ("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침윤암종(invasive carcinoma)의 크기가 2cm 이하면서 림프절의 전이나 타장기 전이가 없는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이하 "초기유방암"이라 합니다.)

[초기유방암 예시]

- 1.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침윤 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성유두암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침윤성검액성암(invasive mucinous carcinoma) 등이 포함됩니다.
- 2.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x 2개종괴

(two mass)

종괴1(mass 1) - 1.0cm x 1.0cm x 1.0cm x 1.0cm 종괴2(mass 2) - 1.2cm x 1.0cm x 1.0cm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는 1.2cm 에 해당하므로 초기 유방암에 해당합니다.

- 3.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 크기(invasive ductal carcinoma size)
 - : 2.0cm x 2.0cm x 1.0cm _ T1 림프절 1개 미세전이(lymph node 1 micrometasis) _ N0mi
 - =>침윤암종의 크기는 초기유방암에 해당하나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있는 경우로 초기유방암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 4. 제자리암종의 크기는 침윤암종의 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 크기(invasive ductal carcinoma size)
 - : 1.0cm x 1.0cm x 1.0cm 유관내제자리암 크기(ductal carcinoma in situ size)
 - : 3.0cm x 2.0cm x 2.0cm
 - =>침윤암종의 크기가 2cm 미만으로 초기유방암에 해당합니다.
- ② 초기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초기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 진단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한하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암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의한 진단 확정으로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약이 소멸(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된 경우에는 제13조(특약의 체결 및

- 소멸) 제5항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이 있는 경우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암진단보험금에서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2항의 '사망'의 원인 및 '암 진단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

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⑨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

-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

- 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0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

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 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 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과 동일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 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암 진단보험금 (제7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주)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위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1년 미만"이란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 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 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및 전립선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 ※ 다만, 여성에 한하여 초기유방암 제외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0,C62,C63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C73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암)	C74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암)	C75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76-C80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81-C96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97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2. 골수섬유증	D47.4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44) 및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61)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5~C26) 중 제4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중 제5조("특정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갑상선암" 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중 제6조("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1. 암 진단보험금 (제7조) 및 책임준비금 (제9조 및 제1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	1년이내	평균공시이 율의 50%
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약관 (주피형, 종피형)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제22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참조]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및 전립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이하, "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제4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5조("특정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갑상선암, 제6조("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특정갑상선암, 제6조("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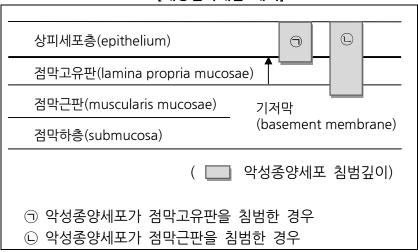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4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 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특정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에서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 선암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중대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C73)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갑상선 수질암(Medullary Thyroid Cancer)" 또는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Thyroid Cancer)"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에서 "갑상선 수질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 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 수 질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 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④ 제2항에서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갑상선 역형성암(미분화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 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암)]로 진단 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중 중 대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나머지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제6조 ("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 중 침윤암종(invasive carcinoma)의 크 기가 2cm 이하면서 림프절의 전이나 타장기 전이가 없는 상 태의 질병을 말합니다.(이하 "초기유방암"이라 합니다.)

[초기유방암 예시]

- 1.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침윤 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성유두암 (invasive papillary carcinoma), 침윤성검액성암(invasive mucinous carcinoma) 등이 포함됩니다.
- 2.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x 2개종괴

(two mass)

종괴1(mass 1) - 1.0 cm x 1.0 cm x 1.0 cm 종괴2(mass 2) - 1.2 cm x 1.0 cm x 1.0 cm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는 1.2cm 에 해당하므로 초기 유방암에 해당합니다.

- 3.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 크기(invasive ductal carcinoma size)
 - : 2.0 cm x 2.0 cm x 1.0cm _ T1 림프절 1개 미세전이(lymph node 1 micrometasis) _ N0mi
 - =>침윤암종의 크기는 초기유방암에 해당하나 림프절의 미세전이가 있는 경우로 초기유방암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
- 4. 제자리암종의 크기는 침윤암종의 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 침윤성유관암 크기(invasive ductal carcinoma size)
 - : 1.0 cm x 1.0 cm x 1.0cm 유관내제자리암 크기(ductal carcinoma in situ size)
 - : 3.0 cm x 2.0 cm x 2.0 cm
 - =>침윤암종의 크기가 2cm 미만으로 초기유방암에 해당합니다.
- ② 초기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초기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7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별표3 "경계성종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암, 제8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대장점막내암과는 구분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별표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9조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뇌와 척수(뇌막과 척수수 막 포함)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으로 양성인 뇌종양으로서 제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5) "양성뇌종양 분류

- 표(경계성종양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 기형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특정갑상선암으로 진단확 정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특정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초기유방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 및 여성에 한함)
 - : 초기유방암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7.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 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 8.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 양성뇌종양 진단보험금 지급
 -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7 "장해분류 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 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열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2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전립 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양성뇌종양을 직접적인 원인 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 일로 하여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해당 진단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항의 '사망'의 원인 및 '진단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 ⑥ 제5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⑦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⑧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 유방암(여성에 한함),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 함),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양성뇌종양과 동일 한 질병(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또는 양성뇌종양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항 및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제9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24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 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1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 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 다
- ④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제1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⑩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8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 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나.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13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세부규정) 제1항 및 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책임준비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4.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2항 제3호의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⑥ 제19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9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⑧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22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제2항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⑨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⑩ 제9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4조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9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9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20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1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 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

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3 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하며,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 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

- 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⑦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 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 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

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의 갱신 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그러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된 경우(다만, 주계 약이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되거나,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로서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3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7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8 "보험금을 지급할 때

-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1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함)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2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함)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특정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3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 단확정에 한함)	[1년이상] 400만원 [1년미만] 200만원
초기유방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4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초기유방암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 정 및 여성에 한함)	[1년이상] 400만원 [1년미만] 200만원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전립선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5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함)	[1년이상] 400만원 [1년미만] 2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제10조 제6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함)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10조 제7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함)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양성뇌종양 진단보험금 (제10조 제8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경우 (다 만, 최초 1회의 진단확 정에 한함)	[1년이상] 200만원 [1년미만] 100만원

×

- 1.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2. 위의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1년 미만(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4.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22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납입하여야 하며,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암"의 경우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 또는 장해상태가 된원인과 동일한 경우("암"의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5.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양성뇌종양으로 피보험자에게 제10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전립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양성뇌종양과 동일한 질병(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진단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특정갑상선암,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 및 전립선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 ※ 다만, 여성에 한하여 초기유방암 제외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0,C62,C63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C73
13. 부신의 악성 신생물(암)	C74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암)	C75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76-C80
1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81-C96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97
18.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9.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20.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2. 골수섬유증	D47.4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44) 및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61)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5~C26) 중 제4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중 제5조("특정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특정갑상선암" 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유방의 악성 신생물(C50) 중 제6조("유방암 중 초기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초기유방암(여성에 한함)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경계성종양 분류표

약관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D47.1,D47.3 D47.4,D47.5제외)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4조("대장암 중 대장 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양성뇌종양 분류표(경계성종양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부호
1.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4.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3
5.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D35.4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 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 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7)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8)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5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관련)

구 분	기 간	지 급 이 자
진단보험금 (제10조 제1호 에서 제8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및 책임준비금 (제12조 및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제18조)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해지환급금 (제27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50% - 1년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재진단암특약(갱신형)(생활보장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해 :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 태를 말합니다.
 - 다. 첫 번째 암 : 이 특약의 보험기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 중 「암보장개시일」[제20조(보험료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6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 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로 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 최초로 진단 확정 되는 "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 번째 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 이하 "첫 번째 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라. 재진단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첫 번째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제20조(보험료 납입 및회사의 보장개시) 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로 이하「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이후 진단 확정되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제4조("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참조, 이하 "재진단암"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다. 적용이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데, 이 할인율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이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 번째 암"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 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 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73[갑상 선의 악성 신생물(암)], 제5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중 분류부호 C61[전립선의 악성 신생물(암)]에 해당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첫 번째 암"이라 함은 「암보장개시일」이후 처음으로 진단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재진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이라 함은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제3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및 "첫 번째 암"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 중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를말합니다.

- 1. 새로운 원발암
- 2. 전이암
- 3. 재발암
- 4. 잔여암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예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제1항 제1호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 (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④ 제1항 제3호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 및 "전립선암" 제외)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 출현되어 치료가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⑤ 제1항 제4호에서 "잔여암"이란 「암보장개시일」이후 발생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이후 "첫 번째 암"이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 되고 전립선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후에 전립선암 진단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⑥ 재진단암의 진단 확정은 병원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제외합니다.
- ⑦ 제6항의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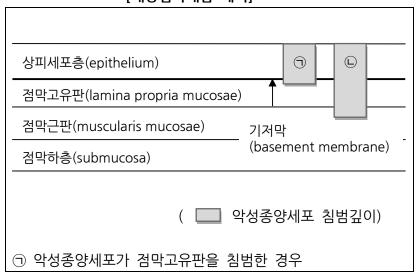
- 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 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⑧ 제6항의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말합니다.
- ⑨ 제6항의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 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재진단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 다. 이 때 특정 행위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 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 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될 때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

임(避姙)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이나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은 행위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약에서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하며, 이하 "대장"이라 합니다)의 악성 신생물(암)(C18~C20)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통과하여 점막고유판(lamina propria mucosae) 또는 점막근판(muscularis mucosae)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이하 "대장점막내암"이라 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판을 침범한 경우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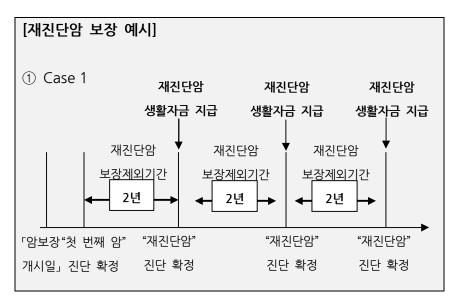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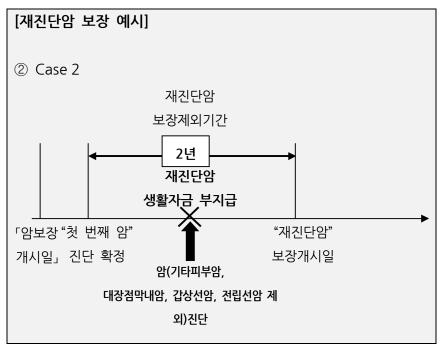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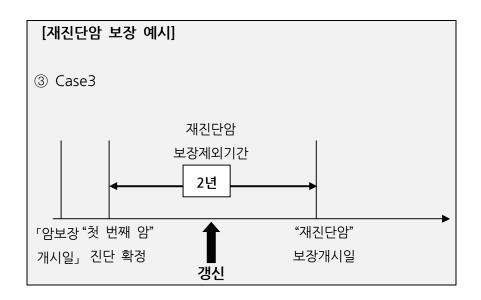
② "대장점막내암"의 진단 확정은 병원의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진단암생활자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이 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과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 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 후 에 사망하고, 그 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진단암생활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4항의 '사망'의 원인 및 '재진단암생활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⑥ 제5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⑦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내에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 ①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 ⑤ 제1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①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 ②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생활자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하 "발생해당일"이라 합니다)에 지급합 니다. 다만,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발 생해당일로 합니다.
- ①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생활자금은 최초의 보험 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을 포함하여 24회 확정 지급합니다.
- ②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연단위복리로 할인한 금액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진단서(병명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제2회 이후의 재진단암 생활자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 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 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3.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첫 번째 암"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③ 이 특약을 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2항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 니다
- 2.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급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

- 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5년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15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기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 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
- 2. "첫 번째 암"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 신계약의 보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3. "첫 번째 암" 또는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⑥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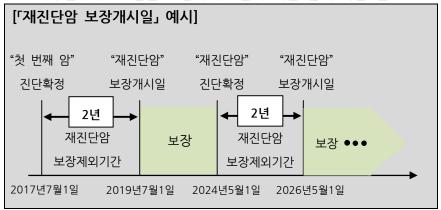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

- 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직전 계약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보장 개시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여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 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 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으며,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⑧ 제7항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전 "첫 번째 암" 또는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 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 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 (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재 진단암 보장개시일」은 제2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 시) 제7항 및 제8항에 따릅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4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 급 사 유	총지급 금액	지급 기준	가입금액 등 표기	
				가입 금액	1회 지급액
재진단암 생활자금 (제6조)	피보험자가 「재진단 암 보장개시일」이후 에 "재진단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1,200 만원	매월 50만원 × 24회 (확정지급)	1,000 만원	50만원

Ж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암보장 개시일」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과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 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이 특약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으며,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 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을 합하여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암"의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 6. 제5호의 「재진단암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 전 "첫 번째 암" 또는 직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 내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재진단암 보장개시일」로 봅니다.
- 7. 재진단암생활자금은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란 1개월마다 돌아오는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해당일을 말하며,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로 봅니다.
- 8. 재진단암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암)	C40-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 신생물(암)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C69-C72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암)	C74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암)	C75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76-C80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C81-C96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	C97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1. 골수섬유증	D47.4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 ※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암, 분류부호 C73)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C15~C26) 중 제5조("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위의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 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제14조 제5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1. 재진단암생활자금(제6조) 및 책임준비금(제14조)

○ 제1회 재진단암생활자금 및 책임준비금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71그710101 2101 이중비대 6001 이내 기가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4.0%)	
71그710101 6101 이중비대 0001 이내 717나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가산이율(6.0%)	
71.7.7.10101 0.101 0.15 7.17.1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가산이율(8.0%)	

○ 제2회 이후 재진단암생활자금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평균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 1년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24조 제1항)

기 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지의 기간	1년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제2회 이후 재진단암생활자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 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암수술특약(갱신형)Ⅲ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암수술특약(갱신형)Ⅲ 1형을 선 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암수술특약(갱신형)Ⅲ 1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강해 : (별표 3)"강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강해 상태를 말합니다.
- 5.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0%)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4"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 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암 수술" 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수술이란, 기구를 사용해서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가 변경될 때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查) 등]은 제외됩니다.

제5조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이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 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후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 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 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 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성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 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 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 에 대한 치료
- ⑤ 동조 제1항에서 제4항은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 성종양", "갑상선암" 및 "대장암 중 대장점막내암"에 적용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제4조("암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수술비((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 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 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장해진단서, 수술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 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4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

- 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 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2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⑥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 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⑦ 제6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9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 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⑥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 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 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4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 급금 액
암수술비 (제6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수술시 200만원 (2회 이후 수술시 1회당 50만원)

(주)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제3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9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 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C69-C72
1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73
13.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C74
1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C75
1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76-C80
16.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C81-C96
1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C97

대 상 악 성 신 생 물(암)	분류부호
18.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9.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20.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2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혈증	D47.3
22. 골수섬유증	D47.4
2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 니다.

(별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1. 암수술비 (제6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4조 제1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가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중환자실 입원특약(갱신형)Ⅲ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 III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중환자실입원특약(갱신형)Ⅲ1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중환자실"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Intensive Care Unit, 집중치료실 또는 집중강화치료실)(이하 "중환자실"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 규격) 2.중환자실」"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별표 5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 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별표 4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 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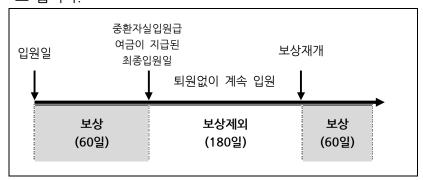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중환자실입원급여금(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3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3조("중환자실" 및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따른 입원이라 도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 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중환 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기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그계속중인 중환자실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계속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의 계속 입원이란 중도퇴원 없이 계속 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중환자실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피보험자의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1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 제1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② 강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강해는 신체의 강해정도에 따라 강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강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입·퇴원확인서(중환자실 입원기간 기입), 장 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보험료 납 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⑥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 ⑦ 회사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⑧ 제7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이 약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 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 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8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7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종피형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녀일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28세 계약해당일이후인 경우에는 28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⑥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환자실입원 급여금 (제4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 속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을 때	중환자실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회 입원당 지급일수 60일 한도)

(주)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제1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 참조)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과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중환자실)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따른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 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화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2.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3.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4.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는 면적을 말한다.
- 5.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 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6.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7.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8.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

- 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0.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1.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2조 제1항 관련)

1. 중환자실입원급여금 (제4조)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교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Ⅲ 1형 약 관

이 특약의 약관은 무배당 교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III 1형을 선택하여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Ⅲ1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의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 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강해 : (별표 4)"강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강해 상태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응급실"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정의와 장소)

- ①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 ②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서 정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제4조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정의)

- ①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이하 "응급환자"이라합니다)
- ② "비응급환자"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2 "질병 및 재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로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이하 "비응급환자"이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다만, 내원 1회 당 지급)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다만, 내원 1 회당 지급)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 류표(별표4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 (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제4조("응급환자"및 "비응급환자"의 정의) 제1항의 "응급환자" 또는 제4조("응급환자"및 "비응급환자"의 정의) 제2항

- 의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 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 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⑥ 제1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 ⑦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⑧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⑨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① 제9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 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 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한 장해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②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 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④ 제1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 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1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①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납입 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 지 사본,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 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 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

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 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 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주피형, 종피형, 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 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 2.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 계약자가 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제 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③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다만, 주계약이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함)에는 이 특약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⑥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4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일 경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때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효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⑦ 이 특약을 주계약에 최초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 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피형, 종피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1. 주피형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다만, 주계약이 2명 보장보험일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2. 종피형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특약을 체결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 우자 또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에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의 종피보험자 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 실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서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일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특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3년 만기 갱신으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부터 제18조(특약의 갱신)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가 3년(갱신할 때 보험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8조 (특약의 갱신)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 갱신 전 계약의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②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 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종피형 피보험자가 주계약 피보험자의 자녀일 경우 주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다만,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 종료일)이 피보험자의 28세 계약해당일이후인 경우에는 28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제2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 ④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갱신할 때의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⑤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⑥ 관련 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특약의 갱신시점에 평균공시이율 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평균공 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④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을 준 용합니다.
- ⑤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 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특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다만, 주계약과 이 특약 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이 소멸된 경우로서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 지) 제2항에 의해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지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 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④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 회복)일로 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3만원
응급실내원 진료비(비응급) (제5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 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3만원

(주)

- 1. "응급환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증상"이 있는 자
- 2. "비응급환자":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제3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제18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 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질병 및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질병 및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 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4)

장해분류표

(별첨 "장해분류표"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 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 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 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화상(외부신체 표면적 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 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 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 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 술이 필요한 환자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및 응급실내원진료비(비응급)(제5조 제1항, 제2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적립기간	지급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보현	ļ계약대출이율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약 관

무배당 건강체할인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관련 용어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4. 보험료 납입관련 용어
 - 가. 건강체 보험료 :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 흡연자 우량체 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보험료
 - 나.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 : 피보험자가 비흡연자로서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제8조(피보험자의 가입자격)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망률

제2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제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강체 할인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의 질문사항 중 흡연여부를 알리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이 특약의 적용 전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이하 "표준체 보험료"라 합니다)보다 적은 건강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과 관계 없이 건강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고 비흡 연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로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건강체 보험료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 특약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이 특약이 부가되는 주계약 또는 특약에 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회사의 승낙을 얻은 자로 합니다.

제8조 (피보험자의 가입자격)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제1호에서 정한 건강상태와 제2호에서 정한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
- 1.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요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가.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 (이하 총칭하여 '흡연(吸煙)'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

- 나. 수축기혈압이 139mmHg이하이고 이완기혈압이 89mmHg이하인 자
- 다. BMI(Body Mass Index)수치(kg/(m x m))가 18.0이상이고 26.9이하인 자
- 2.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지 않고 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자("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을 가입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이 특약의 가입시점에는 "특별조건부특약"을 부가하지 않고 도 주계약 가입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나. 주계약 보험나이가 20세 이상인 자

제9조 (특약의 감액)

- ①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제 11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를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으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② 감액으로 보험가입금액이 회사에서 정한 주계약의 최저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 며, 감액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부터 표준체 보험료로 변경 됩니다.

제10조 (흡연상태 변경통지 및 흡연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흡연을 한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차액"이 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건 강체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이 완료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차액만을 추가 납입합 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차액 및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는 건강체 보험료의 표준체 보험료에 대한 비율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피보험자의 가입자격)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에 해당되고,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제6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이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한 날 이후에 납입하는 보 험료부터 건강체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변동시점의 책임 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차액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11조 (해지환급금)

제9조(특약의 감액) 제1항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할인된 주계약 보험료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여계산합니다.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무배당 사망보장증액특약 약 관

무배당 사망보장증액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나.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제15조(특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었을 경우 최종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0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제2호 및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 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 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 1. 사망시점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 자가 실제 사망한 때로 합니다.
 - 2. '사망'의 원인은 연명의료의 시행사유(질병 또는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또는「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0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 표준체란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 험자를 말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 이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제1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 (피부양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부양자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 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제13조 (사망보장증액특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이 특약은 주계약 체결 이후 5년 이상 지난 후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특약을 부가할 때 피부양자 1 인당 주계약 가입금액의 20%로 하며 주계약 가입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약 부가 1회 당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가입금액의 20% 이상으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각 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는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

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특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특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7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회사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청약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 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등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 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 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화급금 등

제2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4조(특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특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특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드

립니다.

제21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2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제3조)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 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 (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 관련)

1. 사망보험금 (제3조)

기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2. 해지환급금 (제21조 제1항)

기 간	지 급 이 자	
	1년	평균공시이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	이내	50%
일까지의 기간	1년	1%
	초과	1 7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약 관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5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 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 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 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주계약에 보험계약

-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피보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을 체결할 때 또는 특약 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 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 으로서 이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 특

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

제7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 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지정대리청구인이 제5조(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 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9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1조(다른 특약의 취급)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제6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10조 (주계약이 2명보장 계약인 경우의 특칙)

- ① 주계약이 2명보장 계약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주계약이 2명보장 계약인 경우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 ③ 주계약이 2명보장 계약인 경우 제11조(다른 특약의 취급)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 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계약의 소멸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1조 (다른 특약의 취급)

-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 ④ 주계약 및 제9조(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에서 정한 사망보장특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8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 체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서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제1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9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관련)

○ 선지급보험금(제3조)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후정리특약 약 관

이 특약은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특약입니다.

사후정리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별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금 및 해당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지급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 내에서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사망보험금[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합니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기 의사 등으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를 해당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차감합니다.
- ③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 이후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청구를 받더라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주계약 및 그에 부가된 특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아 그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약의 사망보험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7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하 "사망보장특약"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제5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8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청약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④ 주계약 및 제7조(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에서 정한 사망보장특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 1. 보험수익자가 자연인이 아닌 경우

- 2. 보험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3.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 중 1명 이상이 실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 우는 제외

- ② 회사는 이 특약에 따라 주계약 또는 그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 금을 지급한 후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보험수익자는 이 특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환급금 등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에서 아직 반환받지 못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인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로 합니다.

제11조 (해지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0조(보 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화급금 등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3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가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1.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 약 관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2.5%)을 말합니다.
 - 나.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양육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양육연금은 제8조(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3항에서 정한 양육연금지급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양육연금 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매년

주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지급하며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양육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7조(양육연금을 받는 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1항에 서 정한 양육연금을 받는 자(이하 "가입자녀"라 합니다)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육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수 없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4항에서 정한 양육연금 지급기간 중 가입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양육연금을 제2항에 따른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가입자녀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양육연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가입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양육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양육연금을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양육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가입자녀 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 (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3조(양육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양육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가입자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7조 (양육연금을 받는 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양육연금을 받는 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자녀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제1항의 가입자녀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가입자녀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제8조 (양육연금지급서비스특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한하여 신청, 변경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주계약의 계약자는 이 특약을 신청할 때 주계약의 사망보험 금 수익자를 가입자녀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③ 주계약의 계약자는 주계약에서 가입자녀에게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의 50% 이상을 양육연금지급 기준 금액으로 선택하여 야 합니다.
- ④ 주계약의 계약자는 가입자녀 나이 15세, 20세, 25세 중에서 양육연금지급 종료나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양육연금 지급기간은 양육연금지급 종료나이에서 주계약 사 망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가입자녀의 나이를 뺀 기간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을 신청하고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자녀의 나이가 이 특약을 신청할 때 정한 양육연금지급 종료나이 보다 크거 나 같은 경우
 - 2. 이 특약 신청 후 가입자녀가 사망하거나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에서 제외된 경우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9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10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평균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양육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

약 관

보험료납입면제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한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 등의 지급

제3조(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제9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하 "여명"이라 합니다)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되고 계약자

가 이 특약을 신청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여명 판정 당시의 의료기술로 해당 질병의 치료가 불가능하고, 고식적(姑息的) 치료를 포함한 어떤 치료에도 여명이 12개월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12개월분을 한도로 하여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신청 이전에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그 연체된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면제 한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③ 제2항의 납입면제된 보험료는 이후 사망보험금 등 제지급금에서 차 감하지 않습니다.
- ④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한도가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합니다.

제4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

- ① 계약자는 제9조(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진단서)
 -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절차)

회사는 제4조(보험료 납입면제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면제의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의 청약(請約) 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제3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한도가 초과한 이후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9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납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한 날로 합니다.

제11조(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10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3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계약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8조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 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 5 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 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8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8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 (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7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됩니다.
- ② 제8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

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 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는 계약해당일 당시 피보험자(주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에 한함)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보장 대신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해당일 당시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피보험자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종피보험자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주피보험자와 함께 보 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해당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다. 연금지급개시일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생존연금(별표1 "연금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 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수익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보험계약자 또 는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피보험자」의 청

- 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해당일 당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일 전에 효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형은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은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 1. 개인형
 - 전환 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
 - :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
 - :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 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부모

2. 부부형

- 주피보험자
 - 전환 전 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우
 - : 전환 전 계약의 보험수익자

-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우
 - :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전환 전 계약의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
-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 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 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의 적립액(책임준비금)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화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 ⑤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9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별표1 참조)

-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개인형
 - : 정액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체증형 10년(10회)보증, (5%, 10%체증) 체증형 20년(20회)보증, (5%, 10%체증)
 - 부부형
 - : 정액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100세보증) 체증형 10년(10회)보증, (5%, 10%체증) 체증형 20년(20회)보증, (5%, 10%체증)
 - 확정기간연금형(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 상속연금형
- ② 회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개시후에는 보험료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③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 보험자가 사망 등으로 연금지급개시일에 피보험자 중 1명만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자동적으로 개인형으로 전환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0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계약의 지급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해당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止) 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 저보증이율은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7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

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적립액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13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2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4조 (적립액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해당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 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인출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해당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특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형태 중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총 한도는 상속연금 형의 연금지급개시시점 적립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액을 인출할 때 회사는 인출금액 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④ 제1항의 경우 적립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액의 인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⑤ 적립액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 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지환급금 및

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1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적립액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16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연금지급 기준표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			개인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 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10년(10회),20년(20회), 30년(30회),100세보증] - 체증형 10년(10회)보증 (5%,10%체증) - 체증형 20년(20회)보증 (5%,10%체증)
	챙	짜 긴 8기 기미 180	부 부 평	주피 보험자 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 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 정액형[10년(10회),20년(20회), 30년(30회),100세보증] - 체증형 10년(10회)보증 (5%,10%체증) - 체증형 20년(20회)보증 (5%,10%체증)
	() 서 8기 시미			배우자 연금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 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주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되는 연금액의 50% 지급
		확정기간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 25 년, 30년)의 매 년 계약해당일 에 확정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나누어 지급(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급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생 존 연 금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주피보험 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를 상속연금으로 지급(다만,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의 적립액 지급)	

- 주) 1. 적립액은 계약해당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계산은 보험기간중의 「공 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 3. 연금액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나눈 연금을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연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4. 종신연금형의 정액형 및 확정기간연금형은 최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지급되며,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동될 경우 해당년도의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보다 감소(증가)할 수 있습니다.
 - 5.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에 적용하는 체증률(5%, 10%)은 최초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 의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 대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 급된 연금연액을 이 보험의 일시금 수령 신청 당시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100세 보증은 주피보험

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 연액을 이 보험의 일시금 수령 신청 당시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 8. 위의 제6호 및 제7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 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 가 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10.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5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 관련)

1. 생존연금 (제3조)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시이율
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기간	보험기간 만기 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 이율

2. 해지환급금 (제13조)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 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생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5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약 관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은 계약해당일 당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고, 전환 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10년 이상인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별도신청과회사의 승낙에 따라 부가함으로써,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지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계약해당일 당시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교보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계약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보험 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종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주피 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해지환급금 :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계약해당일 : 계약해당일은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하며,

매년 계약해당일은 계약해당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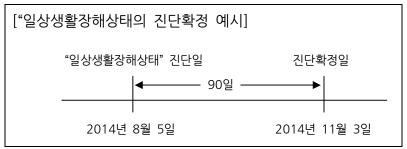
다. 연금지급개시일 :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5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1.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 2. 다음 (가)~(라)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이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 (가) 식사하기
 - (나) 화장실 사용하기
 - (다) 목욕하기
 - (라) 옷입기

- ② 제1항에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일상생활 기본 동작」유형 및「타인의 완전한 도움」판단기준표"[(별표 3) "「일 상생활 기본동작」유형 및「타인의 완전한 도움」판단기준표"참 조]에서 정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 우를 말합니다.
- ③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자[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의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내려져야하며,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장해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제1항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제4조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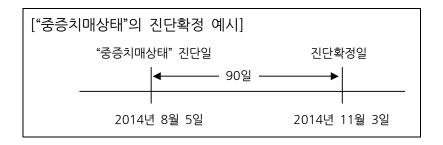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 (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③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 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 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 니다.

"중증치매상태"는 그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 전문의에 의한 진단 등 객관적인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진단 확정됩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생존연금
 - 2.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상생활장해 상태"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장기간병연금 (다만, 장기간 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 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2호의 장기간병연금은 보장개시일 이후 연금개시 전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연금지급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에 연금지급개시일 부터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간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하거나,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장기간병연금은 제3조("일 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및 제4조("중증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 따라 발생한 경우 진 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 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 (회사양식)
 - 2.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진단서

- 3. 피보험자의 생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보험수익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생존연금의 보증지급기간」안에 보험연도 기준 연 1회에 한하여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 로 할인하여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후 계약자가 청약 (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 집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계약해당일 당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③ 제1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이 특약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 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 정)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선고하는 제도로써,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 전 계약의 피보험자(전환 전 계약이 2명(3명, 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의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중 특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1명)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입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 전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해당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시작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일은 보장개시일부터 5년 후 시점입니다.

제5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이 특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7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특약의 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 저보증이율은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7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75%)로 적립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외부지표금리]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 국고채, 회사채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설명]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co.kr)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6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19조 (적용대상)

제20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부터 제23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까지는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2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이 특약으로 전환할 때 또는 전환 이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9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전환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2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2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9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전환 전 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 전 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의 약관 중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적립금 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생존연금(제5조 제1호)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생존연금액을 지급[다만, 생존연금은 10년(10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 중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까지 보증 지급]

(2) 장기간병연금(제5조 제2호)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생존연금액의 1.0배를 지급(다만, 장기간병연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	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치매상태"로 제3조("일상생활	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
강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	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
정) 제3항 및 제4조("중증치매	
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3항에 따라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경우	

주)

- 1. 적립금은 계약해당일부터 전환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3.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의 계산은 매년 연금액 계산당시의 공시이율을 적 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도 변동됩니다.

- 4. 생존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 (20회), 30년(30회) 또는 100세]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거나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위의 제4호의 보증지급기간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6. 장기간병연금은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및 제 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 따라 발생한 경우 진단일 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 종 진단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7. 연금을 매월, 2개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나눈 연금을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연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 8.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 전 계약 가입시점 당시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9. 연금액은 "연금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 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유형 및 「타인의 완전한 도움」 판단기준표

※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유형의 판 단기준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형	판단기준
이동하기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다. (예를 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방 밖으로 나올 수 없어 들것에 실리거나 업혀야만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식사하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 거나, 현재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수액을 통해 부분적인 혹은 전적인 영양분 공급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 사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아 야 다음의 ① 또는 ② 또는 ③을 할 수 있다. ①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 그리고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 ② 실내용 변기(혹은 요강)를 사용하고 비우는 일 ③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예를 들면, 유치(留置) 카테터 등)나 외과적 시술물(예를 들면, 결장루 등)을 사용하는일
목욕하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샤워·목욕을 전혀 할수 없다.
옷입기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다.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 관련)

1. 생존연금, 장기간병연금 (제5조)

적 립 기	지 급	급 이 자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공	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1년	공시이율의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	이내	50%
	이후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보험계	약대출이율	

2. 해지환급금 (제18조)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1년	공시이율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내	50%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1%
	초과기간	1 7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생존연금 및 장기간병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 일자 계산하며,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제25조)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보중도부가서비스특약॥ 약 관

교보중도부가서비스특약॥ 약관

제1관 목적 및 특약의 적용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자'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특약의 적용)

-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이 체결된 이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신청(申請)과 회사의 승낙(承諾)에 따라 해당 시점에 판매 중인 특약 중 회사가 정한 특약(이하 "중도부가특약"이라합니다)을 중도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중도부가특약 가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표준체란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2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중도부가특약의 해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도부가특약 가입과 관련하여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을 해지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4조 (중도부가특약의 체결 및 보장개시)

- ① 회사는 중도부가특약의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회사가 정한 금액(이하 "정산보험료"라 합니다)을 받은 때부터이 특약 및 중도부가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입을 신청할 때 회사가 정산보험료를 받고 승낙한 경우에는 정산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 및 중도부가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정산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중도부가일" 및 "특약계약일"로 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도부가특약에 암보장개시일 등과 같이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 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부터 보장개시일이 새롭게 산정(算定) 되며, 회사는 그 날부터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5조 (중도부가특약의 나이 등 계산기준일)

① 이 특약에 따라 중도부가특약에 가입할 경우 해당 중도부가일 직전의 주계약 연단위 계약해당일(이하 "계산기준일"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부가일이 주계약 연단위 계약해당일인 경우에는 중도부가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을 기준으로 가입 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정하며, 중도부가특약 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와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형특약을 중도부가할 경우, 해당 중도부가 특약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을 가입할 때 부가하였음을 가정한 경우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 며, 이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약관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도부가특약(다만, 갱신형특약은 제외)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중도부가일 직전의 주계약 월계약해당일(중도부가일이 주계약 월계약해당일인 경우에는 중도부가일을 말하며,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일로 합니다)을 계산기준일로 하여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정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6조 (정산보험료의 계산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정산보험료는 아래 각 호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1. 중도부가일 직전 월계약해당일의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사용되는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다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제외)을 말하며, 해당 중도부가특약(다만, 갱신형특약은 제외)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없음. 이하 같음]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험료 납입주기가 3개월납/6개월납/연납인 경우에 발생하는 적립금으로써 납입한 보험료 중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주기가 월납 또는 일시납인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료 납입주기를 6개월납으로 선택한 계약자가 2015년 1월 1일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2015년 3월31일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2015년 1월 1일에 납입한 보험료의 50%입니다.

- 2. 중도부가특약의 납입주기에 해당하는 영업보험료 중 중도 부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주계약 보험료납입기일(다만,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경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해당월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영 업보험료
- ②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정산보험료를 납입한 후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주계약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중도부가특약도 해지합니다. 다만,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 ②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도부가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8조 (보험증권에 기재)

회사가 중도부가특약의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험증 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

제9조 (기타사항 등)

- ① 해당 중도부가특약 약관상 회사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은 중도부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②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회사의 승낙거절, 계약자의 청약철회, 취소, 무효, 해지,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 암보장개시일 등 특약의 보장개시일의 효력" 등에 관한 조항의 "계약일" 등은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중도부가일 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③ 해당 중도부가특약에 대한 "회사의 승낙거절, 계약자의 청약 철회, 취소, 무효, 해지, 2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 등에 지급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 (정산보험료의 계산 및 보험료의 납입) 제1항의 정산보험료와 그 이후 납입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④ 특약 중도부가 시점에 주계약 체결 당시의 특약이 판매중지 되었을 경우에는 유사한 보장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⑤ 기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중도부가특약 약 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중도부가특약의 내용과 이 특약 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 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 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약화된 때에는 그 약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 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10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 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주2)} 상태를 포함한다.
-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②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 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 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 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 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 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25 15 5 10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 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6 4 2 0
기능장해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 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① 뇌영상검사(CT, MRI)
 - ②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 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60 40 20 10 5 20 10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②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 하로 제한되는 경우
 - ③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④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⑤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 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②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

하로 제한되는 경우

- ③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④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⑤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 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 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 준으로 한다. 다만,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 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 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②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②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②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 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

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 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 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강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강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강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강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강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강해	40 30 10 50 30 15 20 15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 착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착추체(착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착추체(착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 부[인접 상.하부 착추체(착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 성 착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착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착추체(착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착추체(착추뼈 몸통) 건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③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③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④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 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②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착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②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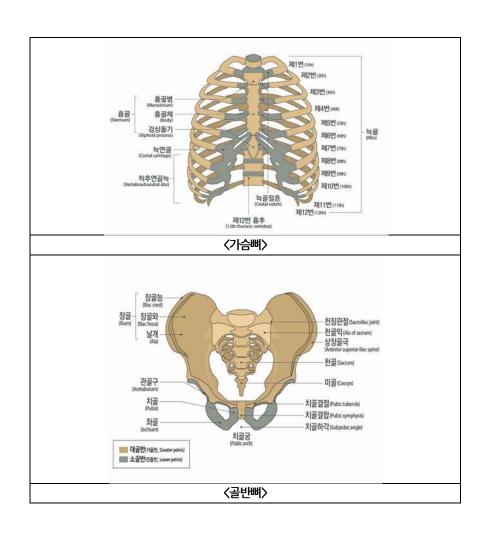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 때
 - ②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또는 한 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 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한 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②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 ③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 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 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 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 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①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②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 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다만,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완전 강직(관절군음)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 ②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 ②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취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角)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0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 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 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①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②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 ②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③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④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축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 다.
-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 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 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角)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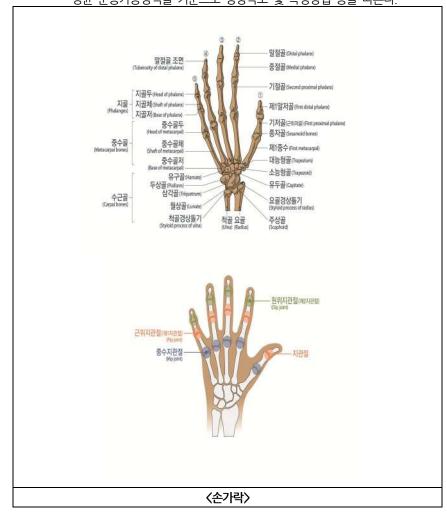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55 15 10
(는기국 이익미니)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손가락 하나마다)	5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

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1. 발가락의 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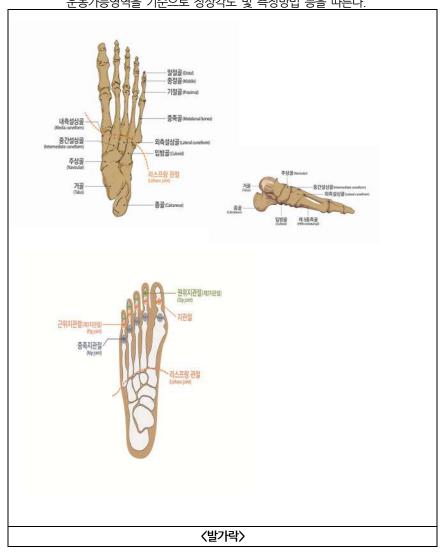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40 30 10 5
(발가락 하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때 또는 무엇인 성에들 담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가는 무엇한 당에를 담힌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발가락 하나마다)	3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은 때"라 함은 촉근 중촉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 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 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30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횽·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위, 대장(결장 ~ 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 일 때
 - ③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④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②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③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④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⑤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⑥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 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②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③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 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 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 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가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 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정신행동강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

- 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②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 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 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 를 말한다.
- ④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⑤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 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 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② 적절한 음식섭취, ④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⑤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⑧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⑩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⑩ 대중교통이나 일 반공공시설의 이용
- ⑥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 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⑦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 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⑧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⑨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⑩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①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 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⑫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③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① "지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③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①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④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 한다.
- ⑤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 다
- ⑥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⑦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 동동 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필요한 상태 (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 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 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 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 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 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 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사워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 이나 사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 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 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은 2019년 3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우선됩니다.

제1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 (이하 생략)

제2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질병관리본부
- 2. 국립검역소
-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 5.「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 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 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민법」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제3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 (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 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 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 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 나 허용한 경우
-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 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 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4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 자의 경우
-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 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1. 진찰 · 검사
- 2. 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 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

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 1항제2호의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1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감액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약사법」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의료법」제3 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 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 천분의 80 이상 1 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표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 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 1)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 1)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3.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 "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u> </u>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제7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 (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질환
-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

- 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 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삭제〉
- 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 정술 및 교정치료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 거술
-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 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 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全顎)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불소국소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 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 적 검사
-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 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 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3인(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1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되, 「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포함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 (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포함하되,「의료법」제3조의5에 따라 지정된 산부인과 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80퍼센트 이상 확보할 것
-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 에 따른 비용
- (1) 가입자등이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

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 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 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의료법」제27 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 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 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 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 완화의료 를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 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 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 입 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 용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7. 9. 1.〉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 차. 삭제 〈2006.12.29〉
- 카. 삭제 〈2018.12.31〉
-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 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거.「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 이식 또는 조직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 5. 삭제 〈2006.12.29〉
-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 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 사목, 제3호 아목, 제4호더목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목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목은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제8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 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②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9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 · 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 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 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 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 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 는 장소
-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를 말한다.
-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 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 (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하다.
-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 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워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소방차
- 나. 구급차

- 다. 혈액 공급차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 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제148조·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본다.
-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 30.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

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관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
- 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

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관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3관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 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 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 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관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주권상장법인
-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보험회사
-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 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지방자치단체
-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 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 감독원"이라 한다)
-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11. 삭제
-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
- 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자

제15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관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하다)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 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 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소득세를 계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

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해당 거주자
-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 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

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③ 삭제
-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 가. 천재지변

-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
- 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
-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 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 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

- 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 가. 삭제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 다. 삭제
-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 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times 3$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 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

- 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 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 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 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 되는 경우
-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 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

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하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 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

- 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 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 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11 - 연금수령연차)	X	100

-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 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 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 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 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 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 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 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 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의료비(제22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1.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2. 치료·요양을 위하여「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 담금
-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 비"란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을 할 때 소요된 비용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 비"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 한다.

제18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 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 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 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 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생략)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제19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 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 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

- 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 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 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 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 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 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 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20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9.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이하 생략)

제21관 약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 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이하 생략)

제22관 예금자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한다.
-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지급할 수 있다.

- ③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는 그 합병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부보금융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후의 부보금융회사와 합병 또는 전환으로 소멸하는 부보금융회사 또는 전환 전의 부보금융회사가 각각 독립된 부보금융회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2종 보험사고를 독립된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 ⑥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등이 제21조의2제 1항에 따른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제3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⑧ 공사가 보험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등에게 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7항 및 「민법」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⑨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보금 융회사가 예금자등에게 가지는 항변(抗辯)으로써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2조(보험금의 계산등)

-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

- 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3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 5. "응급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 지원센터를 말한다.
-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 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관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진찰·검사
-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 4. 예방·재활
- 5. 입원
- 6. 간호
-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1. 삭제
- 2. 삭제
- ② 삭제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1종수급권자 : 2만원
-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

워으로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관 의료법

제2조(의료인)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 사·하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다.
-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 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하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 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 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 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4항에 따
- 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제27관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 인 전방조종자동차
 -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 3.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

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28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 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1]

자동차의 종류(제2조 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 경형			대형	
종류	 초소형	일반형	소형	중형		
	조포병	월민영				
	배기량이	배기량이	배기량이	배기량이	배기량이	
	250cc(전기	1000cc미만	1,600cc미만	1,600cc이상	2,000cc이상	
	자동차의	이고, 길이	이고, 길이	2,000cc미만	이거나, 길이	
승용	경우 최고	3.6미터·너비	4.7미터·너비	이거나 길이	너비·높이 모	
자동	정격출력이	1.6미터·높이	1.7미터·높이	너비·높이중	두 소형을 초	
차	15킬로와	2.0미터 이하	2.0미터 이하	어느 하나라	과하는 것	
	트) 이하이	인 것	인 것	도 소형을 초		
	고, 길이			과하는 것		
	3.6미터·너					
	비 1.5미터					

	·높이 2.0 미터 이하 인 것			
승합 자동 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0 고, 길이 3.6미터·너비 1.6 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15인 이하이 고, 길이 4.7 미터·너비 1.7	35인 이하이 거나, 길이·너 비·높이중 어 느 하나라도	거나, 길이·너 비·높이 모두 가 소형을 초 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 ·	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미만이거나,	5톤 이상이거 나, 총중량이
특수 자동 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 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토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 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 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배기량이 100cc초과	배기량이 260cc(최고정

차	것	고정격출력	†	260c	c 이하	격출력	15	킬
		11킬로와트	≣	(최고	정격출력	로와트)	를 .	초
		이하)이고,	최	11킬	로와트	과하는	것	
		대적재량(기	기타	초과	15킬로			
		형의 경옥	우만	와트	이하)이			
		해당한다)여)	고,	최대적재			
		60킬로그림	뱈	량이	60킬로			
		이하인 것		그램	초과			
				100킬	실로그램			
				이하인	<u>민</u>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
		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승용자동차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
- 6 6 시 6 시		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
		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
		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승합자동차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
		_ 진 것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
		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
화물자동차		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용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
		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거이철 피거이들이 거이오 거오스크 뒤도 그곳이 :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			
		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			
		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			
		인 것			

※ 비고

-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 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 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 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 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 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나. 법 제3조제1항 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 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 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 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 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 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 하다

제29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 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 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
- 파 시합시기·영합에 관한 사영, 나면, 합합부사합사가 기준가격 신영합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9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 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 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0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 ②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 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 가.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2.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3.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7.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다.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하다.
-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 자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

제31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 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삭제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관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략)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생략)

-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

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33관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

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 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 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④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관 형법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 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 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입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 은닉 등)

-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